

테마형 명품해수욕장(무창포) 조성사업 및 콘텐츠 구상

이 인 배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수석연구위원
iblee@cni.re.kr

무창포해수욕장은 2017년 충청남도의 공모사업인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20억원, 2018-2019년) 대상지로 선정되어 해수욕장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구상과 사업추진이 필요함. 특히, 보령8경 중 하나인 무창포해수욕장 바닷길을 지역의 자원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가족중심의 해수욕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함

CONTENTS

1. 해수욕장의 개념적 이해
2. 해수욕장 관련 정책과 개발사례
3. 무창포 해수욕장 특성과 과제
4. 명품해수욕장 조성 및 콘텐츠 구상

요약

- 최근 정부에서는 해양관광진흥계획(2014-2024)을 통하여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을 전략과제로 정하고, 먼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촉진과 매력도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및 콘텐츠 확충사업을 제일의 우선과제로 하고 있음.
- 무창포해수욕장은 자연경관 감상과 휴식, 해수욕, 축제참가를 위해 주로 이용을 하며, 해수욕장 만족도와 재방문의사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역임. 해수욕장의 필요시설로는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확보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무창포해수욕장은 보령8경중 제2경에 해당되는 아름다운 경관 해변으로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의 해수욕장으로 개장되었음. 이러한 가치로 지정관광지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매년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와 수산물 축제 등이 개최됨. 해변은 아기장군 설화와 관련된 상징물, 무창포 바닷길상징탑, 무창포 타워전망대, 주꾸미상징물, 기타 시비와 예술조각품 등이 너무나 다양하게 설치되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차별화와 정리가 필요함
- 이에 무창포해수욕장은 단기적으로는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비의 바닷길의 아기장군 설화를 테마로 하여 무창포 상징광장 및 신비의 바닷길 축제행사장과 연결하여 상가지구내 '아기장군테마휴식공원' 을 조성하고, 해변에 녹지공간은 기존 녹지대에 포토존과 일몰휴식명소로 육성해야함.
- 장기적으로는 아기장군과 관련된 콘텐츠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과 최근 신정부 관광정책으로 추진되는 관광지 시설지구가능시설 재정비 등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해수욕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함.

01

해수욕장의 개념적 이해

1. 해수욕장의 역사적 배경 및 정의

1) 해수욕장의 역사적 배경

- 근대적 의미의 해수욕은 18세기 중반 영국의 의사인 Charles Russel이 ‘해변공기를 호흡하고 바다에 몸을 담그며 바닷물을 마시면 의료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면서 해변에 환자를 모아 실행한 것이 근대 해수욕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음.
- “해수욕(海水浴)”이란 용어의 기원은 일본 메이지시대의 육군 군의총감이었던 마쓰모토준에 의해 한자로 번역되어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885년 일본 최초의 해수욕장이 카나가와현 테루가사키해안에서 개장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도 근대적인 해수욕장 보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에서는 19세기 후반 유럽의 선교사들이 서해 몽금포 및 원산 송도원에서 해수욕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으며, 공식적인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은 일제강점시기인 1913년에 개장한 부산의 송도해수욕장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인천의 송도해수욕장은 1937년 최초의 인공적인 해수욕장으로 조성되어 개장된 기록이 있음.

2) 해수욕장의 정의

- “해수욕(Sea-bathing)”이란 일반적으로 건강증진·피서·레크레이션 등을 목적으로 바닷물에 몸을 씻는 행위로, 원래는 건강회복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원시적인 자연치료요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바다와 바닷가에서 수영 등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이란 이러한 해수욕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 해수욕장으로 활용되는 해변은 주로 지형이 평탄하고 바다로의 접근이 용이한 모래나 자갈로 구성된 곳임. 해수욕장의 범위를 엄밀하게 말하면 해수욕 행위를 하는 공간, 즉 일부 수영이 가능한 해변과 배후해안을 포함하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의 배후시설과 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뜻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수욕 목적의 이용객이 활동하는 공간범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해수욕장 모래사장, 해수면을 공유하는 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해수욕장 배후지의 도시적 환경과 해수욕장 주변의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정비함으로써 종합적인 해양리조트로 전화시켜 나가는 추세에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학문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인문·자연조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고, 통상적으로 해수욕장은 모래해변이 길고, 적정 수심을 확보하고, 조용한 바다 그리고 비교적 온화한 기후와 함께 다양한 해양레크레이션 활동에 적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¹⁾
- 국내에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수욕장의 정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있음.²⁾

2. 해수욕장의 경관적 특성과 관광적 가치

- 해수욕장은 입지에 따라 다소 상이한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육역과 수역이 융합되는 교차지점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독특한 물리적 요소인 생산성·다양성·위락성·방향성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로서 어메니티·개방성·문화성·역사성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

1) 경관적 특성

- 해수욕장은 넓은 수면 조망으로 인한 개방적인 경관제공과 함께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치가 높아 경관연출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해수욕장의 경관적 특징은 시점과 대상간에 수면의 2차원적인 광대함이 있기 때문에 시야의

1) 심미숙(2008), “해수욕장 이용객의 선택속성이 전반적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논문에서 요약정리.

2) 김경태외(2016), “충남 해수욕장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연구”, 충남연구원.

일부에는 반드시 수면이 포함되고 물을 어떻게든 경관 가운데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해수욕장 경관연출의 핵심요소는 재료와 채색이 조화, 스카이라인의 통일, 슬릿(Slit)의 확보, 전망의 확대, 조망의 확보, 식재의 촉진, 랜드마크의 형성임. 따라서 이들의 좋고 나쁨에 따라 해수욕장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짐.

(1) 심미적 특성

- 해수욕장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는 평온함과 친수감을 제공함. 특히 인간의 심리적 요소와 지식의 87%를 시각을 통해 얻는다고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평온함을 제공해 주는 해수욕장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해수욕장 일원의 각종 관광시설 도입 및 관광프로그램 연출 시에 필요한 거리는 인간의 동작을 식별할 수 있는 한계거리라고 일컬어지는 135m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개방성과 공간의 연속성

- 해수욕장은 내륙지의 폐쇄된 생산공간과는 달리 개방된 활동공간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도시내륙지 개발에 있어서는 한정된 공간적 제약이라는 물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넓은 수역을 가진 해수욕장은 해양토목기술의 발달로 해수욕장 전면 깊은 대수심의 무한한 해역공간까지도 다양한 경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 연속성을 지지고 있음.

(3) 방향성과 도시의 랜드마크 기능

- 도시 속에 탁 트인 바다를 향해 입지해 있는 해수욕장은 지역전체가 시야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도시의 위치를 보다 쉽게 판단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수욕장은 도시의 위치관계를 보다 쉽게 구분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시의 지표가 될 수 있음.

2) 관광적 가치

(1) 새로운 미래산업 공간

- 물이라는 요소가 생명의 존립을 좌우하는 근원이 되며, 역사적으로 모든 산업이 물을 발전의 근원으로 삼아왔듯이 광대한 수변을 끼고 있는 해수욕장도 임해도시의 활력제공과 더불어 미래 도시발전의 매우 중요한 공간적 요소가 될 수 있음.
- 어업이나 항만활동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물 의존형의 1, 2차 산업이 발달되어 온 과거의 해수욕장은 그 동안 단순한 조망형이 여가공간이나 해수욕장 기능이 전부였고, 도시의 생산기능으로서의 역할은 미약했음.
- 그러나, 미래의 해수욕장은 관광산업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도시산업의 육성·부화공간 (Incubation Space)으로서 매우 중요한 도시공간적 요소가 될 것임.

(2) 시민여가 및 관광적 기능

- 해수욕장은 그 자체가 자연이라는 특성과 함께 바다냄새, 파도소리, 수평선 등 도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차별적인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음.

해수욕장에 도입 가능한 여가 및 관광위락 활동

| 구분 | 배후지 | 해안 | | | | 해면 | 해중 |
|--------|-----|----|----|-----|----|----|----|
| | | 단애 | 암초 | 백사장 | 호안 | | |
| 해수욕 | | | | ● | | ● | |
| 조개잡기 | | | | ● | | ● | |
| 서핑 | | | | ● | | ● | |
| 보트젓기 | | | | ● | | ● | |
| 카약 | | | | ● | | ● | |
| 요트 | | | | | ● | ● | |
| 보트 | | | | | ● | ● | |
| 수상스키 | | | | | ● | ● | |
| 스킨다이빙 | | | ● | | ● | ● | ● |
| 스쿠버다이빙 | | | ● | | ● | ● | ● |
| 해안낚시 | | | ● | ● | ● | ● | |
| 그물던지기 | | | | ● | | ● | |
| 물놀이 | | | ● | | | | |
| 생물채집 | | | ● | | | | |
| 야영 | ● | | | ● | | ● | |
| 모래스키 | | | | ● | | | |
| 풍경탐사 | ● | ● | ● | ● | | ● | |
| 해중탐사 | | | | | ● | ● | ● |
| 관람·견학 | ● | | | | | | |

자료 : 일본관광협회, 관광계획수립, 1990.

- 도시의 매우 중요한 공공재의 하나인 해수욕장은 물 그 자체 또는 수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도시의 인공적 요소를 융합시켜 여가 및 도시리조트 공급공간으로 창출이 가능함.

- 즉 관광적·경관적 매력을 지니고 있는 해수욕장은 여가·관광·레크레이션 등과 같은 최상의 도시리조트의 공급공간이 될 수 있음.

3. 해수욕장의 입지조건과 구조

1) 해수욕장의 개념적 이해

- 해양관광지중 가장 대표적인 비치형(Beach Type) 해양리조트, 즉 해수욕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본 관광협회는 “불특정 다수인이 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으로서 안전하게 유영하거나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환경, 관리 기구를 갖춘 공공적인 해변”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수욕장 및 해변놀이 조건

| 자연조건 | 활동 | 해 수 욕 장 | 해변놀이(낚시 등) |
|--------|----|--|-------------------------------------|
| 파도의 상태 | | 파고는 50cm 이내가 가장 적당하며, 1m 이상일 때는 위험 | 파고가 낮은편이 위험성이 적으나 파도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안됨 |
| 조류 | | 수영 한계유속 : 50cm/sec 수영 주의유속 : 20~30cm | 관령성이 적음 |
| 수온 | | 수영 한계수온 : 20-24℃ | 특별히 차가운 수온(10℃ 이하)이 아니면 적합 |
| 수질 | | 대장균수가 1,000MPN/100mℓ이하 또는 유막을 느낄 수 없을 정도, 투시도 30cm 이상, pH7.8-8.3, 바다찌꺼기, 먼지 등의 부유물이 적을 것 | 해수욕장만큼의 심한 제약은 없으나 수질이 좋을수록 적합성이 높음 |
| 해저상태 | | 진흙과 암석이 없을 것, 입경은 2mm 이내의 모래가 적합, 해저경사는 2-10%가 적당하고, 수영가능한 수심은 1.5m가 적당 | |
| 수제선 | | 길이는 500m이상이 적절하며, 폭은 1.5m | 넓고 개방적인 해안이 적당 |
| 해양생물 | | 사람에게 유해한 생물이 적을 것 | 수면이 맑고 바다생물 관측이 용이한 곳 |
| 배후여건 | | 배후지에 수림지, 구릉지가 있고 좋은 햇볕과 유입하천이 없을것 | |
| 기온 | | 24℃ 이상일것 | 추위를 느낄 정도(10℃)가 아니면 적합, 20℃이상이 적합 |
| 천기 | | 청명한날이 2주간 이상 | 맑은날이 적합 |
| 바람 | | 풍력 5m/sec 이하가 좋음 | 강풍(10m/sec)은 적합지 않음 |

자료 : 일본관광협회, 해양성 관광지 계획의 안내, 1987 재인용

- 최근에는 해수욕장 모래사장, 해수면을 공유하는 레저활동의 증가에 따라 해수욕장 배후지의 도시적 환경과 해수욕장 주변의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정비함으로써 종합적인 해양리조트로 전환시켜 나가는 추세임.
- 현재 국내에서 학문과 제도적 측면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인문·자연조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고, 통상적으로 해수욕장은 모래해변이 길고, 적정 수심을 확보하고, 조용한 바다 그리고 비교적 온화한 기후와 함께 다양한 해양레크레이션 활동에 적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2) 해수욕장의 입지조건

- 해수욕장 및 해변놀이에 관한 입지와 조건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여 볼 수 있음. 해양스포츠에 관련한 활동 자체가 자연의 조건이나 영향에 의하여 그 활동 영역과 시기가 결정됨.

해수욕장의 입지조건

| 입지조건 검토요인 | | 건설상의 조건 | 활동상의 조건 | |
|------------|------|-------------|---------|---|
| 자연조건 | 지형조건 | 해빈형사 | ◎ | ○ |
| | | 해저지형 | ◎ | ○ |
| | | 배후지의 지형 | ◎ | - |
| | | 유입하천 | ◎ | - |
| | | 표사특성 | ◎ | - |
| | | 해빈사의 특성 | ◎ | ◎ |
| | | 방위 | - | ◎ |
| | 기상조건 | 기온·수온 | ◎ | ◎ |
| | | 풍향 | - | ◎ |
| | | 조위 | ◎ | ○ |
| | 해상조건 | 파랑 | ◎ | ◎ |
| | | 유황(流況) | ◎ | ◎ |
| | | 수질 | ◎ | ◎ |
| | 환경조건 | 생물 | ◎ | ◎ |
| 경관 | | ◎ | ◎ | |
| 유치권인구·시간거리 | | ◎ | - | |
| 지역사회 조건 | 유치조건 | 교통(육상·해상) | ◎ | ◎ |
| | | 관광 레크레이션 시설 | ◎ | ◎ |
| | | 해역이용 | ◎ | ◎ |
| | 공간조건 | 육역이용 | ◎ | ○ |
| | | 상위계획 | ◎ | - |
| | 지역요청 | 주민요청 | ◎ | - |
| | | 법규제조건 | ◎ | ○ |

주 : ◎:매우 관련이 깊다 ○:관련이 있다 -:관련이 적다
 자료 : 일본관광협회, 해양성 관광지 계획의 안내, 198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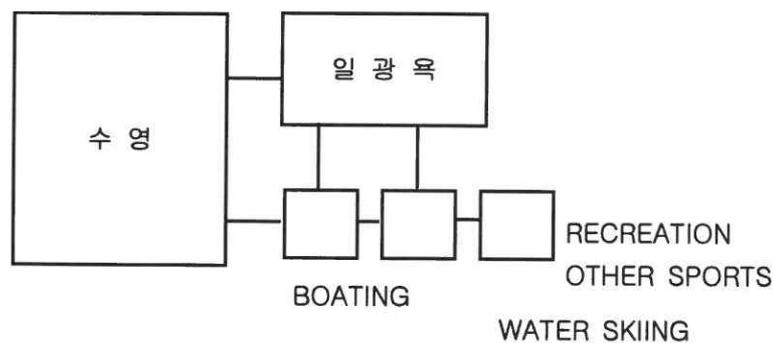
- 즉, 바람을 이용하는 윈드서핑, 요트, 수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스킨다이빙, 스노클링, 해중탐사, 수온의 영향을 받는 수영, 물때를 맞추어 실시하는 낚시, 잔잔한 호수에서의 수상스키, 모험과 물의 친숙정도에 따라 즐기는 카누 등임³⁾.

3) 해수욕장의 본질 및 구조

- 레크레이션은 여가행위의 수단임.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중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패턴을 중심으로 해수욕장의 본질을 살펴보면 해수욕장의 일반성, 해수욕장 행위의 본질, 해수욕장 구조의 본질로 구분됨.
- 해수욕장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접근방법은 행위의 본질, 구조의 본질, 유통의 본질 등 인위적·물리적·생태적인 측면에서부터 출발함. 상호 주체와 객체사이의 대상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해수욕장이 갖는 근본적인 체제가 될 것임.

(1) 해수욕장 행위의 본질

- 해수욕장에서의 주체의 행위는 방문객으로 볼 수 있는데, 방문하는 주체로서 행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음.
- 첫째로 해수욕과 수영임. 도시의 수용장이나 강물에서의 수영은 넓은 바다, 태양, 모래와 더불어 충분한 유인요소로서의 해수욕장보다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해수욕장의 행위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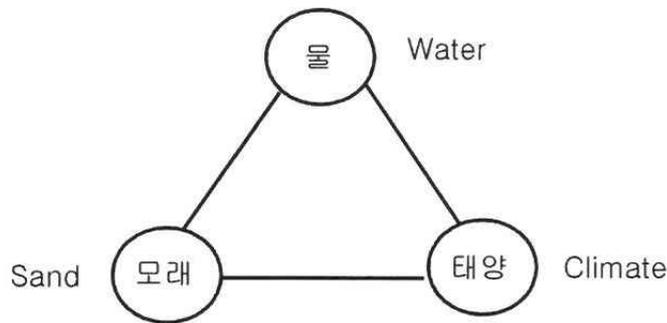
- 둘째는 일광욕임. 1년중 가장 더운 여름의 피서는 바다에서 일광욕을 함으로서 신체의 저항력을 저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모래와 태양은 훌륭한 자원이 됨.

3) 윤근수(2006), “충남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의 해양스포츠 인식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셋째는 수상스키와 보트놀이임. 이것은 좀 차원을 달리하여 기구를 사용하는 동적인 요소임. 그리고 넷째는 앞의 해수욕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레크레이션의 다양성임.

(2) 해수욕장의 구조

- 해수욕장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은 자원구조(resource structure)와 지역구조 (regional structure), 시각구조(visual structure)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자원구조는 해수욕장을 구성하는 자원은 첫째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물과 잔잔한 수면으로서 완만한 경사, 해수욕으로 알맞은 수심을 확보될 수 있어야 함. 둘째는 깨끗한 모래로서, 모래에 암사질, 점토분이 섞이거나 잠재되어서도 안됨. 셋째로는 맑은 태양 즉 상쾌한 기후조건을 의미함.



해수욕장의 자원구조 개념도

- 지역구조는 해수욕장의 이용의 접근이 편리해야 할 것에 대한 조건이 해당됨. 지역적인 구조가 해수욕장으로서 호젓한 환경이어야 함. 해수오염의 지역적인 토지이용의 배후조건이라든지 교통체계가 원활히 유통되는지의 문제와 이용객을 위한 거점도시의 지역구조의 문제임.
- 해수욕장의 시각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는 것은 특히 조경계획에서 필요함.
 - 첫째로 바다는 평면적인 시각요소가 됨. 둘째로 육지와 바다의 접합점인 해안선은 곡선의 수평요소로 강조되어야 함. 셋째, 해수욕장을 육성하는 주요 자원의 하나가 되는 모래사장은 수평선을 기초로 하여 바다와 육지의 매개역할을 함. 넷째, 인근의 배후지대나 산은 해수욕장의 배경이 됨. 다섯째는 해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의 섬들은 수평면의 균형을 조화시키는 시각 대상지가 됨. 여섯째로 곡선형의 해안선은 시각의 변환점(visual turning point)이 됨. 일곱째, 해수욕장 부근에 등대나 관제탑이 있다면 상징적인 수직요소가 되며, 긴장감을 만족시킴.⁴⁾

4) 해수욕장의 테마설정과 특징

- 국토해양부는 2011년 8월에 「해변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수욕장 정보활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잠재수요자의 선호유형, 언론사 추천에 의한 해수욕장 테마를 발굴하여 테마해수욕장 컨셉을 설정하였음.

(1) 컨셉 및 해수욕장 테마 설정

- 해수욕장의 잠재 수요자의 해양관광활동 및 해수욕장 관광활동 선호경향을 검토하고 중앙일간지의 해수욕장 추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해수욕장 컨셉을 "Re-fill, Body & Soul"로 설정하고 레저해변, 휴양해변, 경관해변, 자연해변, 향토해변, 그리고 건강해변으로 설정 제안하였음.₩

| | | 해양관광활동 | 해수욕장 관광활동 | 중앙일간지 추천활동 |
|------------|--------------------------|---|--|--|
| 시장 선호 활동 | | ·해수욕 중심 활동 ·해양테크레이션, ·해양생태 ·고비용 해양 레저 / 휴양 | ·유명해수욕장 ·우수경관 정경환경 ·교육적 가치/축제 활동 | ·아름다운경관감상 ·특이 테마형 ·레포츠/캠프 체험 ·자연생태, 역사교육, |
| 테마받글 기본방향 | | 활동성/고급화/심미성/교육성/테마화 | | |
| 기대 편익 | | 바다(OCEAN)_ 원기회복, 재충전 | | |
| 컨셉 | | <i>Re-Fill, Body & Soul!</i> | | |
| 컨셉 및 테마 제안 | 세부 테마 | <i>Re-Fill! Activity!</i> | <i>Re-Fill! Majesty</i> | <i>Re-Fill! Beauty</i> |
| | | 다양·미친 해양레포츠의 활동형 해수욕장 | 고비용의 품격있는 휴양형 해수욕장 | 뛰어난 해양/해변의 경관형 해수욕장 |
| | | 레저 해변 | 휴양 해변 | 경관 해변 |
| | <i>Re-Fill! Ecology!</i> | <i>Re-Fill! Tasty</i> | <i>Re-Fill! Healthy</i> | |
| | 해양 자연생태 교육형 해수욕장 | 해산물 시식 및 자연향기체험의 흥미형 해수욕장 | 온천 및 테라피 체험의 건강형 해수욕장 | |
| | 자연 해변 | 향토 해변 | 건강 해변 | |

테마해수욕장 컨셉 및 세부 테마 설정

자료 : 국토해양부(2011), “해변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수욕장 정보활용방안 연구” .

(2) 테마별 해수욕장 특징

- 해수욕장 이용객 실태조사에서 나타나듯이 해수욕장 이용 패턴은 기존의 해수욕 중심의

3) 김태희(2003), “영동지역 해수욕장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해변관광활동 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의 다양한 해양관광활동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하계 시즌이외의 계절별로 확대되고 있어 테마해수욕장 설정은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자원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변 해양관광자원과 역내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해수욕장의 주요 테마는 레저해변, 휴양해변, 경관해변, 자연해변, 향토해변, 건강해변 등 6개로 구분되며, 자원의 특징과 시설 및 공간의 입지형태에 따라 유형화가 되고 있음. 자원의 징과 해수욕장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자원의 특징 | 해수욕장 사례 | 해수욕장 이미지 |
|-------|--|-------------------------------|---|
| 레저 해변 | 해양레크레이션, 해양 스포츠, 해양캠프 등 활동형 해양활동 지향 | -포항 구룡포해수욕장 -태안 푸지나무골 해수욕장 |  |
| 휴양 해변 | 특급 호텔 및 고급 휴양리조트 입지 복합 휴양 활동 지향 | -남해 사촌해수욕장 -제주 중문·색달해변 |  |
| 경관 해변 | 자연명승지(국가지정 문화재)/해안누리길 /일출·일몰 경관감상 지향 | -양양 하조대해수욕장 -신안 하트해수욕장 |  |
| 자연 해변 | 해양자연사, 습지, 철새탐조, 해양동식물 관찰 활동 지향 | -울진 사곶해수욕장 -사천 남일대해수욕장 |  |
| 향토 해변 | 바다 특산물 및 향토 수산 음식 구매·시식/춘·추계 자연 향기 (꽃축제 등) 체험 지향 | -고성 가진해수욕장 -제주 표선해비치해변 |  |
| 건강 해변 | 보양, 치유, 테라피 등 건강증진 활동 지향 | -울진 구산해수욕장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  |

테마별 해수욕장 특징

자료 : 국토해양부(2011), “해변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수욕장 정보활용방안 연구” .

(3) 테마별 해수욕장 설정

- 이상에서 유형화된 테마 해수욕장들은 향후 구축될 테마 해수욕장 전용 홍보사이트에 소개되어 신속하고 차별화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332개 해수욕장 중에서 테마 해수욕장은 5단계에 걸친 추진과정으로 추천되었음.

| 구분 | 자원의 특징 | 해수욕장 사례 | 해수욕장 이미지 |
|------------------|-----------------------------------|--|---------------|
| 1단계 | - 하계 이용객 100만 미만 해수욕장 | - 집중 해수욕장 15개소 제외 - 지자체, 계절별 분산 및 이용 유도 | 317개소 |
| 2단계 | - 지자체 추천 해수욕장 | - 지자체 추천 해수욕장 192개소 - 지자체 현지 실정에 대한 의견 수용 | 177개소 |
| 3단계 | - 일간지 추천/ 우수 지정 해수욕장 - 중복 해수욕장 | - 일간지 추천 79개소, 우수 지정 35개소 - 강원, 권 전체 추천, 인천권 전체 비추천 - 검증된 해수욕장 선별 필요 | 45개소 |
| 4단계 | - 6개 테마별 해수욕장 테마 실체 파악 연구 | - 국토해양부(2010), 해양관광레저동계 - 지자체 해수욕장 추천 자료(2011, 4) - 일간지 추천 자료 및 인터넷 정보 | 6개 테마 33개소 |
| 5단계 | - 6개 테마별 테마해수욕장 추가 연구 및 발굴 | - 지역별 테마별 해수욕장 안배 - 강원, 경기권 테마해수욕장 발굴, 제안 - 지역별 테마해수욕장 추가 발굴, 제안 | 6개 테마 18개소 제안 |
| 최종 6개 테마 51개소 추천 | | | |

자료 : 국토해양부(2011), “해변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수욕장 정보활용방안 연구” .

테마별 해수욕장 선정 과정

- 테마별 해수욕장 추천 과정에 따라 6개 테마의 51개소 테마 해수욕장을 선정하였는데 테마별 해수욕장 추천현황은 먼저 경관해변 12개소, 건강해변 5개소, 레저해변 7개소, 에코해변 14개소, 맛과 향의 향토해변 8개소, 휴양해변 5개소임.
- 지역별 테마해수욕장 추천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8개소, 경북 5개소, 울산 1개소, 제주 6개소, 경남 7개소, 전남 7개소, 전북 3개소, 충남 7개소, 경기 2개소, 인천 5개소임. 이들 중 충남의 해수욕장 7개소는 경관해변 난지도해수욕장과 신두리해수욕장, 레저해변 꾸지나무해수욕장, **자연해변은** 청포대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사목해수욕장, 향토해변은 몽산포해수욕장 등이 선정되었음⁵⁾.

테마별 해수욕장 선정 현황

| 구분 | 강원 | 경북 | 울산 | 제주 | 경남 | 전남 | 전북 | 충남 | 경기 | 인천 | 계 (개소) |
|----------|-----------|-----|----|----------|-----------------|-----------|-------------------|------------------|-----|----------|-----------|
| 경관 해변 | 하조대 맹방 | 고래불 | - | 함덕 | 솔바담 구조라 | 하트 | 격포 | 난지도 신두리 | 궁평리 | 십리포 | 12 |
| 건강 해변 | 외옹치 | 구산 | - | 화순 | - | 울포 돌머리 | - | - | - | - | 5 |
| 레저 해변 | 삼포 | 구룡포 | 일산 | 이호 테우 | 동영 공설 | 외달도 | - | 꾸지 나무 | - | - | 7 |
| 자연 해변 | 화진포 동호 | 망양정 | - | 십지 코지 | 남일대 | 홀동 | 선유도 동호 (고창) | 청포대 부창포 사목 | 제부리 | 동막 사곶 | 14 |
| 항토 해변 | 가진 | 나정 | - | 표선 | 은모래 학동 몽돌 | 대왕 | - | 몽산포 | - | 구리동 | 8 |
| 휴양 해변 | 오산 | - | - | 중문 색달 | 사촌 | 우전 | - | - | - | 왕산 | 5 |
| 총계 | 8 | 5 | 1 | 6 | 7 | 7 | 3 | 7 | 2 | 5 | 51 |

자료 : 국토해양부(2011), “해변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수욕장 정보활용방안 연구” .

3) 국토해양부(2011), “해변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수욕장 정보 활용방안 연구” 에서 인용·재정리함

1. 국내 해수욕장 관련 정책동향

1)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4)

(1)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 본 계획에서는 첫 번째의 전략과제에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으로 정하고, 먼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으로 해수욕장 매력도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콘텐츠 확충사업을 제일의 우선과제로 하고 있음.
-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배경,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촉진

- ◆ (목표) 단기적으로 해수욕장 관리강화를 통해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계절 편중성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추진배경

- 해수욕장은 가장 보편적인 해양관광 활동공간*이나, 그간 관련 정책은 단순 시설개선, 위생환경·안전 관리에만 국한

* 해수욕장 지정현황('12) : 49개 시·군·구에 358개 해수욕장 지정·고시

* 해수욕장방문객 : ('11) 7,808만명 → ('12) 7,527만명 → ('13) 8,770만명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연중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4계절 이용 해수욕장' 시범사업('12~'13, 국비 15억원)

추진내용

1-가-① 해수욕장 매력도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및 콘텐츠 확충

- 수요자 중심의 공간활용 계획 수립을 통해 해수욕장을 복합레저공간으로 조성
 - 자연해안 복원 및 해변방풍림 조성 등 배후 도로·상가시설과의 완충구역 확보
 - 수상레저기구 운용구역과 물놀이 구역을 구분하고 레저선박 계류장, 진출입로 등 레저활동 지원시설 확충
 - 수심이 깊거나 고르지 못한 해변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플로팅(floating) 풀 또는 해수풀 등 조성 추진
- '공원이 있는 해수욕장, 영화가 있는 해수욕장' 등 테마 이벤트 개최를 통해 해수욕장 매력도 제고
- 해수욕장을 도시 위락형-전원 휴양형으로 유형화하고 이용수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시범사업 선정·시행
 -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14)하고, 지자체 사업공모를 통해 ' 17년까지 6개소 시범 개발
 - * 보조사업 평가(' 13)시 지적된 일부 해수욕장에 대한 중복 지급 및 정액보조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율 50% 적용

1-가-②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

- 해수욕장 관련 단일법 제정*을 통해 해수욕장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해수욕장 관리·육성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원입법 발의(' 13.7.2)
-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 상황실 운영, 통신장비 확충 등 추진
 - 해파리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이안류, 해파리, 태풍 등 위험정보 제공을 위한 전광판·방송부이 설치 확대
 - * ' 15부터 R&D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시설의 개량을 위한 연구 지원 추진
- 수질검사·백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및 장애인 등 관광취약 집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 * 수질검사 강화 및 백사장 모래의 관리기준 마련(' 14)
- 해수욕장 관리운영 실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운영
 - 해수욕장 특성별 평가기준 차별화, 평가요소 및 가중치 조정 등 평가기준 개선(' 14)

1-가-③ 해수욕장 웹 사이트개선 및 모바일 앱 개발 등 다각적 홍보 지원

- 해수욕장 정보사이트의 콘텐츠 현행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해양관광포털(바다여행) 등 유관 사이트와 연계 추진(' 14)

- 날씨, 이안류 지수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해수욕장과 연계한 여행경로 추천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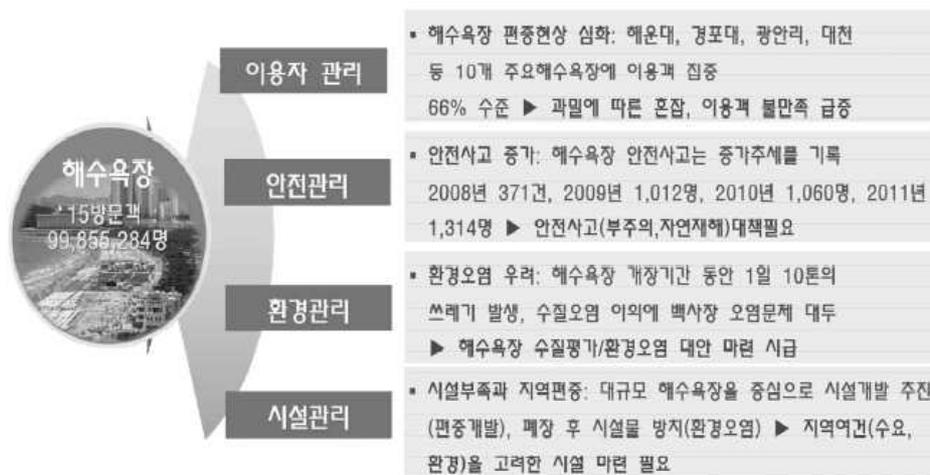
○ 해수욕장 이용 및 주변 맛집·숙박 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등 다각적 홍보 실시(’15)

○ 해수욕장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해수욕장에 대해 기념조형물 설치 등 집중적 홍보 추진

2)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1) 국내 해수욕장 관리 현안 해결과제 도출

- 해양수산부에서는 재출범과 함께 해양관광·레저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추진과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맞추어 국내 최대 해양관광수요처인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와 중장기 육성전략을 수립함.
-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수욕장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중장기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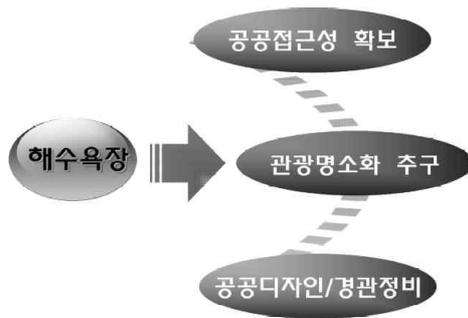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내 해수욕장 관리 현안 해결과제

(2) 해수욕장 이용활성화 방향

- 이 계획에서는 해수욕장 이용활성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공공접근성(Public access) 확보와

관광명소화 추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또는 Design for all) 개념의 도입에 두고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 이용활성화 방향

(3) 해수욕장 이용활성화의 비전과 목표

- 해수욕장의 중장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비전은 “즐겁고 안전한 국민해양휴양공간 조성” 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단기 목표는 해수욕장의 이용환경개선으로 설정함. 또한 장기 목표로는 해수욕장을 연안지역의 관광명소화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임.

| | | |
|------|---------------------------|----------------------------------|
| 비전 | 즐겁고 안전한 국민 해양휴양 공간 조성 | |
| 목표 | 단기 : 해수욕장의 이용환경개선 | |
| | 장기 : 해수욕장의 지역관광 명소화 실현 | |
| 추진전략 | 편리한 해수욕장 (해수욕장 공공성 확보) | - 해수욕장 기초정보 구축 - 해수욕장 편의성 개선 |
| | 즐거운 해수욕장 (해수욕장 이용성 개선) | - 해수욕장 이용활성화 - 해수욕장 소프트웨어 정비 |
| | 쾌적한 해수욕장 (해수욕장 관광성 강화) | - 해수욕장 관광시설 확충 - 해수욕장 하드웨어 정비 |
| | 안전한 해수욕장 (해수욕장 안전성 강화) | - 해수욕장 안전성 강화 -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축 |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 비전과 목표

(4) 해수욕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 해수욕장 활성화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는 해수욕장 기초정보 구축사업, 공공디자인개선사업, 안심해변 지킴이사업, 우수해수욕장 홍보사업 공공미술 설치사업이 있음.
- 이용성 개선사업은 해수욕장 기업홍보사업, 해수욕장 경관시설 조성사업, 레저체험 시설 조성사업, 축제/이벤트 지원사업, 해수욕장 환경·생태교육사업이 있음.
- 관광성 강화사업은 테마마을 육성사업, 마을 해수욕장 정비사업, 인공해변·해수욕장 정비사업, 해수욕장 편익시설 정비사업, 해수욕장 공원화 사업, 해수욕장 관광복합공간 정비사업 등을 사업계획으로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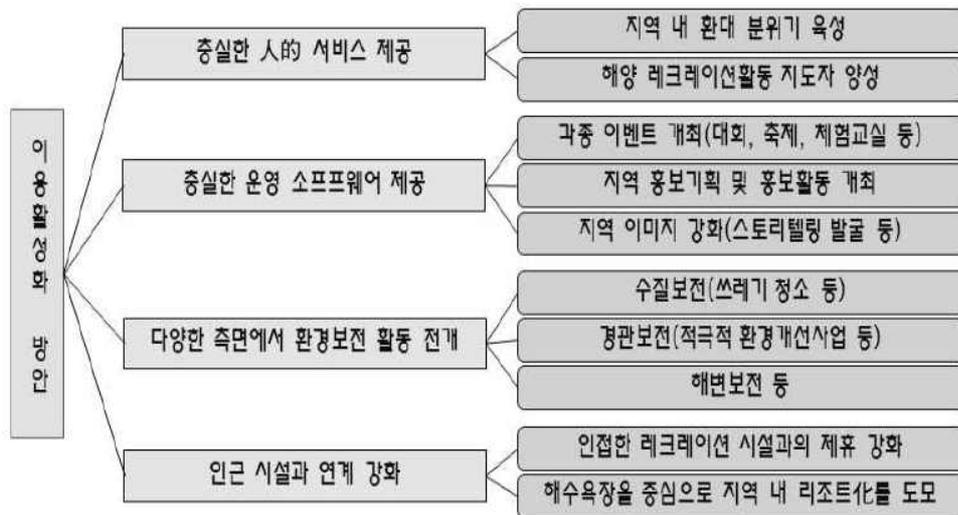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5) 국내 해수욕장 이용활성화의 기본방안

- 해수욕장은 다양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체험)학습 등으로 활용 가능한 야외공간으로서 지역과 인근 시민은 물론 많은 외지인을 유입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소중한 지역자원임.
- 그리고 국내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뚜렷한 계절성을 띠기 때문에 하계 휴가철을 중심으로 약 2개월을 제외하면 방문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도서지역이나 도심권과 떨어진 지역은 다계절 이용계획 수립이 용이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해수욕장 이용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인적 서비스와 관광상품 등 소프트웨어, 환경보전, 주변시설과의 연계 강화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함.
- 이에 해수욕장의 관광활성화 방안은 충실한 인적 서비스 제공, 충실한 운영 소프트웨어 제공,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보전 활동 전개, 인근 시설과 연계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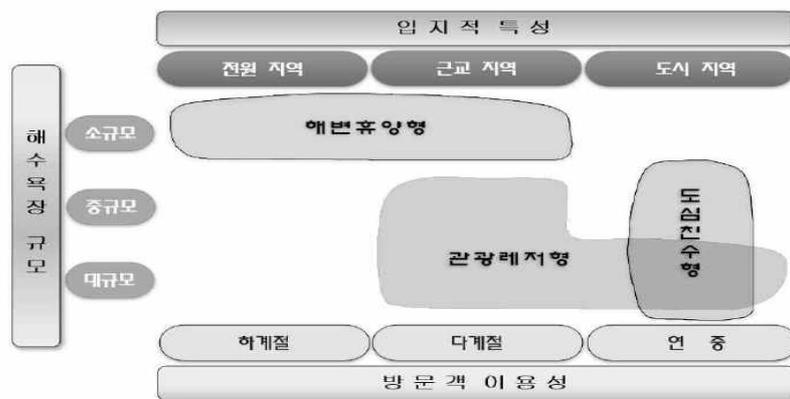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 기본방안

(6) 해수욕장의 입지 특성별 유형구분

- 해수욕장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유형은 관광활동의 목적과 입지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음. 한편,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해변에서의 관광활동 행태는 해역여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이와 더불어 도심권, 도서, 관광지 등 배후지역의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방향에 큰 차이가 나타남. 국내 해수욕장은 동해, 서해, 남해라는 해역별 자연 환경적 특성보다는 관광자원 여건과 배후지와와의 접근성에 따라 이용시기와 관광활동에 차이가 발생함.
- 이에 따라 국내 해수욕장의 이용 여건에 따른 개발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즉 해수욕장 유형은 입지적 특성과 규모 그리고 방문객 이용(예상)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변휴양형, 관광레저형 그리고 도심친수형 등 입지적 특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향후 해수욕장 개발목적과 규모 그리고 도입시설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나 유형별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해변휴양형 : 도심지에서 떨어진 전원지역에 입지하며 대부분 소규모 해수욕장으로서 주로 여름 휴가철에 가족단위로 이용하기 적합함. 집객력이 다소 부족하므로 기존 해수욕장의 정비와 체험 프로그램의 구축 그리고 지역내 숙박시설과 캠핑공간의 확충 및 정비 등이 요구됨
- 관광레저형 : 도심지와 전원지역 사이에 입지하는 해수욕장으로 주로 여름휴가철과 봄, 가을 행락철에 가족 또는 단체 규모의 방문객 이용이 적합함. 중급 규모의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그리고 해양레저지원센터 등이 도입가능한 시설로 판단되며 도입시설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계절적 한계를 탈피하여 연중 이용이 가능함
- 도심친수형 : 도시 내 또는 가까이 인접한 해수욕장으로 대부분 중규모 이상의 해수욕장으로 현재로서도 다양한 인프라가 정비된 경우가 많음. 여름철과 봄, 가을은 물론 높은 접근성을 배경으로 겨울철에도 지역주민과 타지역의 관광객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임. 이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관광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므로 문화공연시설, 이벤트/축제 공간 그리고 산책로와 시민쉼터 등에 대한 확충과 정비 정도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숙박시설과 관광객 흡인시설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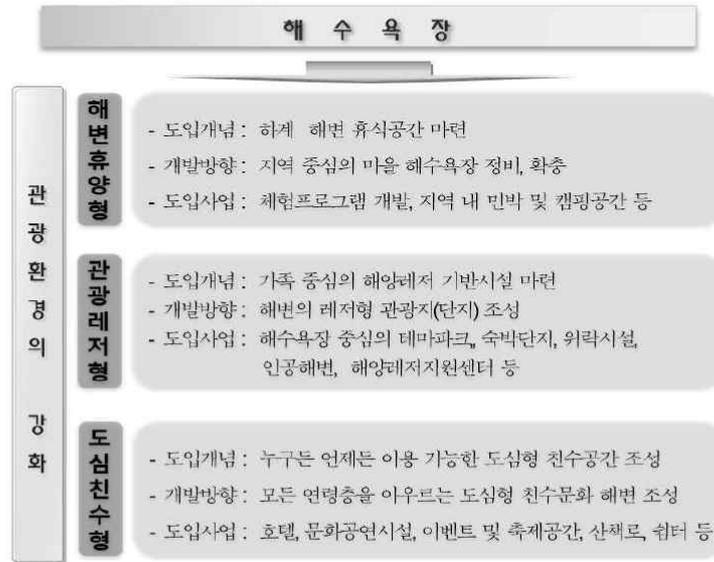
- 이와 같은 해수욕장의 유형을 입지적 특성, 규모 그리고 방문객 이용성을 토대로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음.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 입지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안)

(7) 해수욕장 유형별 개방방향

- 유형별 해수욕장의 관광환경 강화를 위해서 개발 개념과 개발방향 설정 그리고 도입사업에 대한 예시를 열거할 수 있음. 한편 이러한 유형 분류 이외에도 각각의 해수욕장이 지니는 자연적 특성을 배경으로 지역민, 방문객, 행정기관 그리고 대학 등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수욕장에 차별화된 테마를 부여하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여야함.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 유형분류와 개발방향

2. 국내 해수욕장 관련 법규

- 해수욕장 관련 법률로는 공간이용측면에서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산림법,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원이용측면에서 해양수산물전기본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법, 광업법, 골재채취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그리고 환경생태측면에서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생태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등이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수욕장은 모두 316개소로서 관리행정체계상의 주무부처는 국토해양부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등)이 지정·고시·운영토록 하고 있음. 현행 해수욕장 관련법규로는 중앙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에서 제정한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 기준(국토해양부 예규 제 88호)’ 과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련 제184호)’ 이 있으며 그 외 광역시·도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음.
- 이외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인 시·군·구별 ‘해수욕장 운영 관리 및 시설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들이 제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2014년 12월 4일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2014. 12. 4)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의 제도화를 마련하였음.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정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2014. 12. 4)의 목적은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특히, 해수욕장법에 따르면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과 같다.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제2조 1항).
- 이법에서는 해수욕장 시설은 기본 및 기능시설, 지원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시설사업과 물놀이 구역, 수상레저구역 등 기존의 해수욕장 관련 법규에서는 없었던 시설과 사업 및 공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청에 대한 용어도 정의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정의

| 구 분 | 구분 내용 |
|-------------|---|
| 목적 (제1조) | ·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정의 (제2조)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량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오수·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나. 지원시설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2) 체육시설 3) 판매·대여시설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해수욕장 시설 구분

| 기본 및 기능시설 | | 지원시설 | |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
| 백사장 | 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구역 | 행정 시설 |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 해양레저 시설 및 그 부대시설 |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
| 산책로 | - | 체육시설 | | 조경시설 | 잔디밭, 방풍림(防風林), 분수대 등 |
| 편의시설 |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 판매·대여시설 | | 문화·체험시설 |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안전시설 |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 | | | |
| 환경시설 | 오수·폐수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 | | | |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

| 시설 | 기준 |
|-------------|--|
| 백사장 | 1) 전년도의 평균 해면(海面) 기준으로 길이 100미터 이상, 폭 20미터 이상일 것 (전년도의 해당 해수욕장 이용객이 3만 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수욕장 이용객의 신체상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물질이 없을 것 |
| 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
|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 | 물놀이를 위한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이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은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 환경 | 기준 |
| 백사장 |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수역 | 1) 만조 시 기준으로 백사장의 길이 방향의 가운데 지점의 해수면 시작점부터 수심 1.5미터 이하의 해수면이 10미터 이상일 것 2)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는 쓰레기 등 부유물(浮遊物), 해조류 및 유해해양생물 등이 없을 것 3) 수역의 수질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試料)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장구균(Enterococci): 100CFU/100mL 이하 또는 100MPN/100mL 이하 나) 대장균(E.coli): 500CFU/100mL 이하 또는 500MPN/100mL 이하 |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 해수욕장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 해수욕장의 지정 절차와 지정의 변경 및 해제, 해수욕장의 현황조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

고 있다. 더불어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욕장 지정내용

| 구 분 | 구분 내용 |
|------------------------|---|
| 해수욕장의 지정 (제6조) | <p>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위치·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
|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7조) | <p>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희귀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
| 해수욕장의 현황조사 (제8조) | <p>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방법·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p>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내용

| 구 분 | 구분 내용 |
|-------------------------|--|
| 기본계획의 내용 (제10조)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기본계획의 변경 (제11조)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2조)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제13조) |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관리계획의 내용 (제14조) |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현황 2.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관할 해수욕장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관리계획의 변경 등 (제15조) |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실태조사 (제16조)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3)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 해수욕장은 앞에서 정의된 물놀이수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며, 개장기 관과 관리·운영방식,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 해수욕장에서 준수사항, 원상회복과 시설물 등 제거 등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운영 기준

| 구 분 | 구분 내용 |
|-------------------------|--|
| 해수욕장의 구역 (제17조) | <p>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제18조) | <p>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 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p> |
|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19조) | <p>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해수욕장 협의회 (제20조) | <p>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p> <p>② 해수욕장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사용료의 징수 (제21조) | <p>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운영 기준(계속)

| 구 분 | 구분 내용 |
|----------------------------|--|
| 해수욕장에서 의 준수사항 (제22조) | <p>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7.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0.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p>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
| 원상회복 등 (제23조) | <p>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

4) 해수욕장의 안정 및 환경관리

- 해수욕장은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안전관리지침과 안전관리조치, 수상레저 기구의 운용,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환경적 차원에서 환경관리지침과 수질관리, 백사장관리, 폐기물관리, 유해생물관리 등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 및 환경관리

| 구 분 | 구분 내용 |
|-------------------------------|--|
| 안전관리지침 (제24조) | <p>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p> <p>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안전관리조치 등 (제25조) | <p>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p> <p>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p> |
|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등 (제26조) | <p>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
| 해수욕장시설 의 안전점검 (제27조) | <p>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p> |
| 해수욕장시설 의 안전점검 (제27조_계속) | <p>③ 관리청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시기·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 및 환경관리 (계속)

| 구 분 | 구분 내용 |
|-----------------------------|---|
| <p>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제28조)</p> | <p>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p> <p>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p> |
| <p>환경관리지침 (제29조)</p> |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환경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수질관리 (제30조)</p> | <p>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할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질의 조사·분석 결과 해당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p> <p>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수욕장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p> <p>⑤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공지에 관하여는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수질의 조사·분석방법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 및 환경관리 (계속)

| 구 분 | 구분 내용 |
|--------------------|---|
| 백사장 관리 (제31조)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해수욕장 경관을 저해하고 해수욕장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모래 등을 보충하는 등 백사장의 복구·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백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
| 폐기물 등 관리 (제32조)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폐기물 집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해수욕장이 쾌적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유해생물 관리 (제33조) | ① 관리청은 해파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생물의 발생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5) 해수욕장 시설사업

- 해수욕장을 통한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지역 관광수입 창출을 위하여 해수욕장시설사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욕장시설사업

| 구 분 | 구분 내용 |
|-----------------------------|--|
|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 (제34조)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제35조)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욕장시설사업(계속)

| 구 분 | 구분 내용 |
|---------------------------------|---|
| 해수욕장시설 사업의 시행 등 (제36조) | ①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전용(專用)할 목적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37조) | ①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38조) | ① 관리청이 제3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욕장시설사업(계속)

| 구 분 | 구분 내용 |
|--------------------|---|
|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38조) | <p>12.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p> <p>13.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p> <p>1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1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p> <p>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p> <p>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②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

6) 해수욕장 평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해수욕장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수욕장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해수욕장의 평가

| 구 분 | 구분 내용 |
|------------------|---|
| 해수욕장의 평가 (제39조) |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우수한 해수욕장과 개선이 시급한 해수욕장을 각각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의 대상,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제40조) | <p>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②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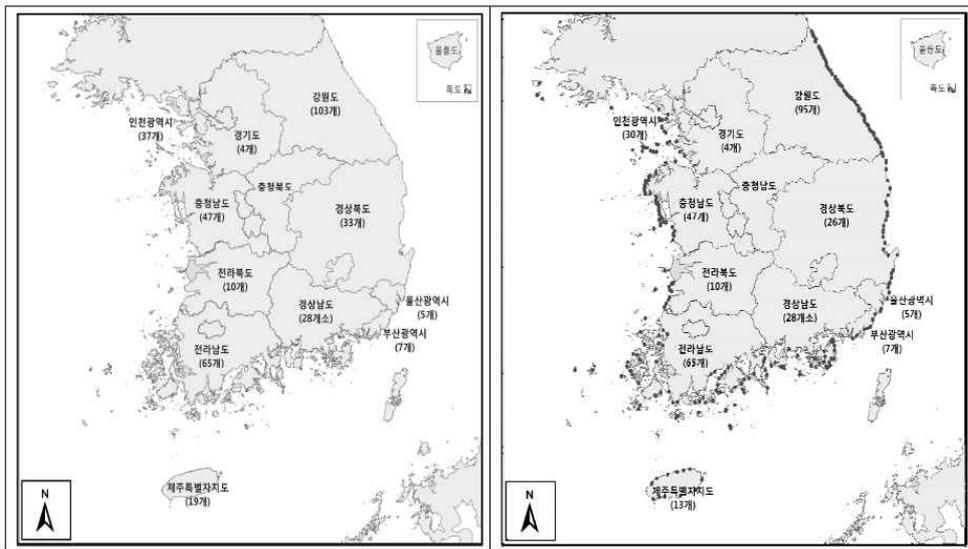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계속)

| 구 분 | 구분 내용 |
|-------------------|---|
| 해수욕장 정보시스템 (제41조)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보고 (제42조) | ·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위임·위탁 (제43조) |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3. 국내 해수욕장 현황과 이용 성향

1) 전국 해수욕장 분포 현황⁶⁾

- 전국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수는 매년 다른데, 최근까지 전국 49개 시·군·구에 총 358개소가 지정·운영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개장 경험이 있는 전국 해수욕장 분포 현황

6)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자료에 2015년에 개장한 국내 시도별 해수욕장은 총 295개로 해수욕장법 기준 지정 해수욕장은 254개, 비지정 해수욕장은 41개이며 분포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고, 전국 지정 해수욕장 254개의 분포현황은 그림과 같음.

2015년 기준 전국 해수욕장 분포현황

| 구분 | 합계 | 부산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총계 | 295 | 7 | 30 | 2 | 3 | 92 | 34 | 7 | 56 | 25 | 28 | 11 |
| 지정 | 254 | 7 | - | 2 | - | 92 | 34 | 3 | 55 | 25 | 25 | 11 |
| 비지정 | 41 | - | 30 | - | 3 | - | - | 4 | 1 | - | 3 | - |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5년 기준 전국 지정 해수욕장(254개)의 분포 현황

2) 전국 해수욕장 이용행태 분석⁷⁾

(1) 해수욕장 방문순위와 선택이유

- 방문한 해수욕장을 조사한 결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방문했다는 응답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남 대천해수욕장(20.6%), 강릉 경포대해수욕장(18.0%), 부산 광안리해수욕장(11.4%), 인천 을왕리해수욕장(7.6%), 무창포는(2.3%) 15위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적으로는 부산에 위치한 해수욕장(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해수욕장)을 방문한 비율이 높으며,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주요 4대 해수욕장(해운대, 대천, 경포대,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음.

방문 해수욕장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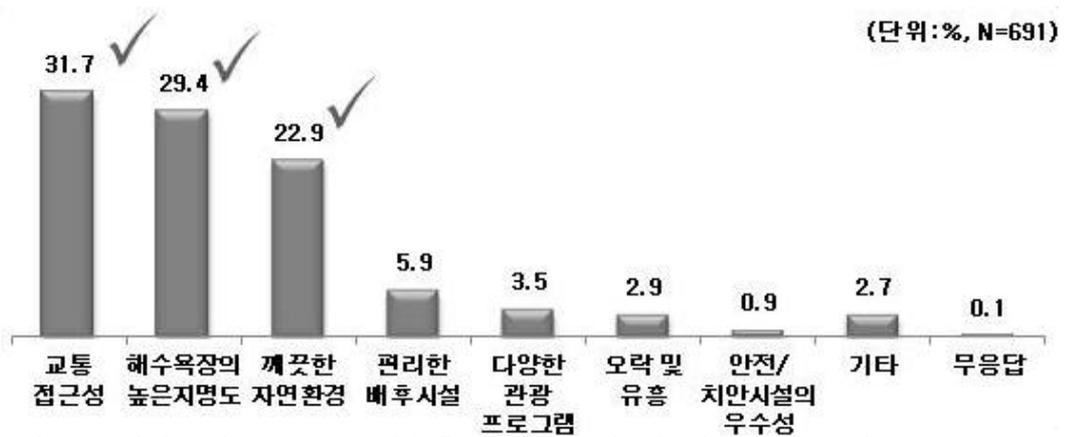
단위: %

| 연번 | 해수욕장명 | 비율 | 연번 | 해수욕장명 | 비율 |
|----|----------|------|----|----------|-----|
| 1 | 해운대 | 50.6 | 24 | 정동진 | 1.5 |
| 2 | 대천 | 20.6 | 25 | 고래불 | 1.5 |
| 3 | 경포대 | 18.0 | 26 | 남일대 | 1.5 |
| 4 | 광안리 | 11.4 | 27 | 이호 | 1.5 |
| 5 | 을왕리 | 7.6 | 28 | 일산 | 1.5 |
| 6 | 속초 | 7.0 | 29 | 영일대/영일만 | 1.5 |
| 7 | 꽃지 | 6.3 | 30 | 칠포 | 1.4 |
| 8 | 망상 | 6.1 | 31 | 청포대 | 1.3 |
| 9 | 송정 | 5.7 | 32 | 월포 | 1.3 |
| 10 | 송도 | 4.8 | 33 | 함덕/함덕서우봉 | 1.3 |
| 11 | 안면도 | 3.8 | 34 | 정자 | 1.3 |
| 12 | 낙산 | 3.5 | 35 | 삼척 | 1.0 |
| 13 | 몽돌/학동/몽돌 | 3.0 | 36 | 방죽포 | 1.0 |
| 14 | 협재 | 2.9 | 37 | 명사십리 | 0.9 |
| 15 | 무창포 | 2.3 | 38 | 보령 | 0.9 |
| 16 | 만리포 | 2.2 | 39 | 무의도 | 0.9 |
| 17 | 만성리 | 2.0 | 40 | 다대포 | 0.8 |
| 18 | 변산 | 1.9 | 41 | 추암 | 0.8 |
| 19 | 진하 | 1.9 | 42 | 동막 | 0.8 |
| 20 | 주문진 | 1.8 | 43 | 고성 | 0.8 |
| 21 | 상주 | 1.7 | 44 | 장사 | 0.7 |
| 22 | 중문 | 1.7 | 45 | 부원 | 0.7 |
| 23 | 강릉 | 1.6 | | | |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7)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서 인용 요약정리

- 해당 해수욕장을 선택하여 방문한 이유로는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선택했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해수욕장의 지명도가 높아서라는 응답이 29.4%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 비해 교통 접근성을 비교적 적게 고려한 반면, 지방 거주자는 교통 접근성을 중시해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는 접근성보다는 해수욕장의 지명도와 자연환경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접근성과 지명도 다음으로는 깨끗한 자연환경(22.9%), 편리한 배후시설(5.9%),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3.5%), 오락 및 유흥(2.9%), 안전/치안시설의 우수성(0.9%) 등을 고려해 방문할 해수욕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해수욕장 선택 이유

(2) 해수욕장 선호도와 이유

- 선호하는 해수욕장 유형과 다른 관광지에 비해 해수욕장을 좋아하는 이유, 해수욕장에서 체험했던 활동과 각 활동별 만족도, 향후 체험하고 싶은 활동을 비롯하여 앞으로 해수욕장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등 해수욕장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에 대해 분석하였음.
- 응답자의 80.4%는 여유있는 해수욕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해 응답자의 대다수가 유명한 해수욕장보다는 조용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응답자들이 실제로 방문한 해수욕장을 보면 해운대, 대천, 경포대, 광안리, 을왕리, 꽃지 등 유명하고 방문객들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임. 즉, 해수욕장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보다 해수욕장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해수욕장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낮고 개발이 덜 된 해수욕장에 대한 방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단위: %, N=1,041)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선호하는 해수욕장 유형

- 다른 관광지와 비교했을 때 해수욕장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 자연과 어울리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관광활동과의 연계(49.0%) 측면에서 해수욕장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음.

연령별 · 거주지별 해수욕장 선호 이유

| 구분 | 자연과 어울리기 위해서 | 주변에 다른 관광활동과 연계 | 여름 해수욕장의 독특한 분위기 | 해양 레저스포츠 활동 | 다양한 축제, 행사 등 | 기타 | |
|-------|--------------|-----------------|------------------|-------------|--------------|------|-----|
| 연령 | 19~29세 | 60.2 | 41.2 | 52.6 | 19.4 | 20.4 | 1.9 |
| | 30대 | 62.7 | 45.6 | 51.2 | 21.0 | 14.7 | 2.0 |
| | 40대 | 69.7 | 51.1 | 42.4 | 18.6 | 16.7 | 0.4 |
| | 50대 | 72.7 | 57.7 | 41.4 | 9.3 | 16.7 | 0.0 |
| | 60대 | 78.2 | 48.3 | 27.6 | 18.4 | 18.4 | 0.0 |
| 거주지역 | 서울 | 67.7 | 44.7 | 49.5 | 19.2 | 14.8 | 0.3 |
| | 수도권 | 69.3 | 54.2 | 44.3 | 15.8 | 12.5 | 1.2 |
| | 충청권 | 60.9 | 52.2 | 30.4 | 20.3 | 29.0 | 0.0 |
| | 전라권 | 66.1 | 44.6 | 55.4 | 17.9 | 10.7 | 5.4 |
| | 경북권 | 63.7 | 50.0 | 43.1 | 16.7 | 23.5 | 0.0 |
| | 경남권 | 67.5 | 44.4 | 46.4 | 15.2 | 23.2 | 1.3 |
| 강원/제주 | 72.2 | 52.8 | 30.6 | 19.4 | 22.2 | 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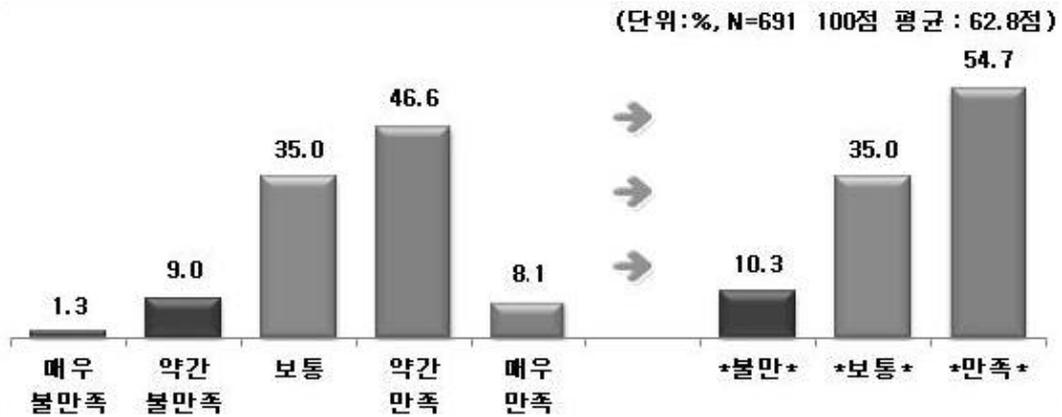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그 외 여름 해수욕장의 독특한 분위기가 좋아서 해수욕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5.1%,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때문에 선호(17.3%), 다양한 축제, 행사 등 때문에 선호(17.1%) 순으로 나타났음. 전 연령에 걸쳐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9세~30대의 젊은층은 여름철 해수욕장이 가지는 독특한

분위기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음.

(3) 해수욕장 방문활동과 만족도

- 방문했던 해수욕장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54.7%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10.3%에 비해 44.4% 포인트 높게 나타나 해수욕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수욕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100점 환산 점수로 변환하면 62.8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방문 해수욕장 만족도

- 해수욕장을 방문하면 주로 자연경관을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9.2% (중복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로는 음식관광 및 수산물 구매(84.0%)를 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으며, 해수욕 및 일광욕(63.7%), 도보관광(63.6%), 역사유적지 방문 및 해양문화체험(46.0%), 해변 캠핑(34.8%), 모터보트나 바나나보트 탑승(30.6%), 해변축제 참가(29.4%), 바다낚시(24.0%), 서핑(10.5%)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수욕장을 방문했다라도 해수욕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6.3%를 차지해 해수욕 이외의 목적으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연령에 관계없이 해수욕장을 방문해 자연경관을 감상하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모터보트나 바나나보트 탑승 또는 윈드서핑 등 격렬한 해양레저활동은 30대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한편 바다낚시는 5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 주로 낚시를 즐기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 해수욕장에서 체험한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10개 활동 모두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도보관광이 71.5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바다낚시활동(68.3점),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67.6점), 역사유적지 방

문과 해양문화체험(67.5점), 해변축제 참가(67.3점) 등 모든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수욕장 방문 시 활동

| 구분 | | 자연 | 음식 | 해수욕 | 도보 | 역사 | 해변 | 모터 | 해변 | 바다 | 윈드 |
|------|-----------|-----------------|------------------|------|------|------------------------------|------|-----------------------|----------|------|-----------|
| | | 경관 감상 /휴식 | 관광/ 수산물 구매 | /일광욕 | 관광 | 유적지 방문/ 해양 문화 체험 | 캠핑 | 보트 바나나 보트 탑승 | 축제 참가 | 낚시 | 서핑 /서핑 |
| 연령 | 19~29세 | 83.7 | 80.6 | 57.7 | 58.2 | 34.7 | 25.5 | 30.1 | 27.0 | 18.9 | 12.2 |
| | 30대 | 90.0 | 78.0 | 65.1 | 56.4 | 35.7 | 42.3 | 40.2 | 29.5 | 24.5 | 16.2 |
| | 40대 | 91.1 | 87.2 | 69.3 | 65.0 | 51.0 | 33.1 | 29.2 | 30.4 | 21.4 | 8.9 |
| | 50대 | 91.0 | 90.5 | 67.0 | 69.7 | 55.2 | 38.9 | 26.7 | 32.6 | 29.0 | 6.3 |
| | 60대 | 89.7 | 82.8 | 48.3 | 75.9 | 62.1 | 29.9 | 19.5 | 24.1 | 28.7 | 5.7 |
| 거주지역 | 서울 | 90.5 | 85.9 | 71.0 | 62.5 | 44.9 | 37.5 | 33.6 | 30.4 | 21.6 | 12.7 |
| | 수도권 | 89.3 | 85.1 | 62.8 | 61.9 | 47.6 | 32.6 | 29.3 | 22.6 | 22.3 | 9.1 |
| | 충청권 | 79.1 | 85.1 | 52.2 | 61.2 | 46.3 | 35.8 | 29.9 | 32.8 | 28.4 | 11.9 |
| | 전라권 | 92.3 | 67.3 | 50.0 | 59.6 | 46.2 | 40.4 | 28.8 | 23.1 | 25.0 | 7.7 |
| | 경북권 | 86.9 | 79.8 | 59.6 | 62.6 | 47.5 | 33.3 | 32.3 | 35.4 | 24.2 | 11.1 |
| | 경남권 | 89.9 | 86.2 | 63.8 | 71.7 | 42.0 | 31.9 | 26.1 | 39.1 | 23.9 | 9.4 |
| | 강원 /제주 | 97.1 | 85.7 | 65.7 | 68.6 | 51.4 | 40.0 | 37.1 | 34.3 | 48.6 | 8.6 |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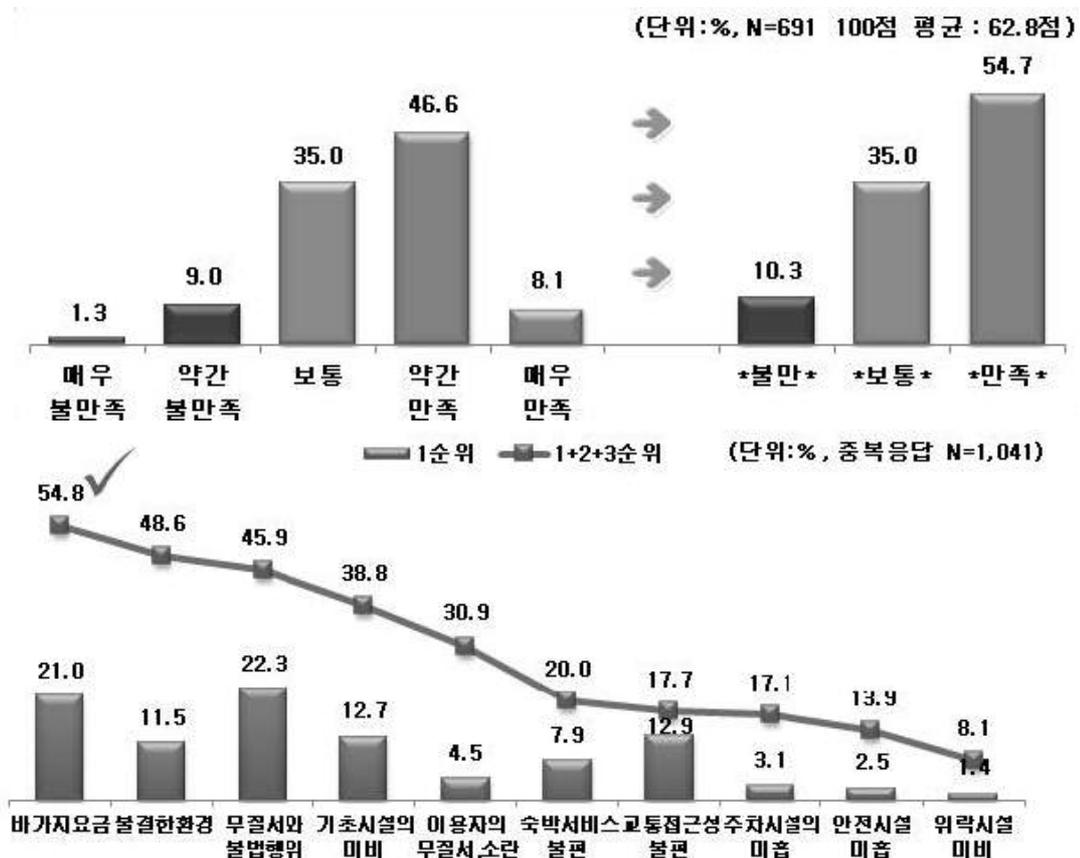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74쪽.

해수욕장에서 하는 활동별 만족도

- 한편 음식관광과 수산물 구매(63.7점), 해변 캠핑(64.0점)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해수욕장 방문이 집중되는 여름철이 수산물 구입 및 시식에는 비성수기라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음.

(4) 해수욕장 개선사항과 재방문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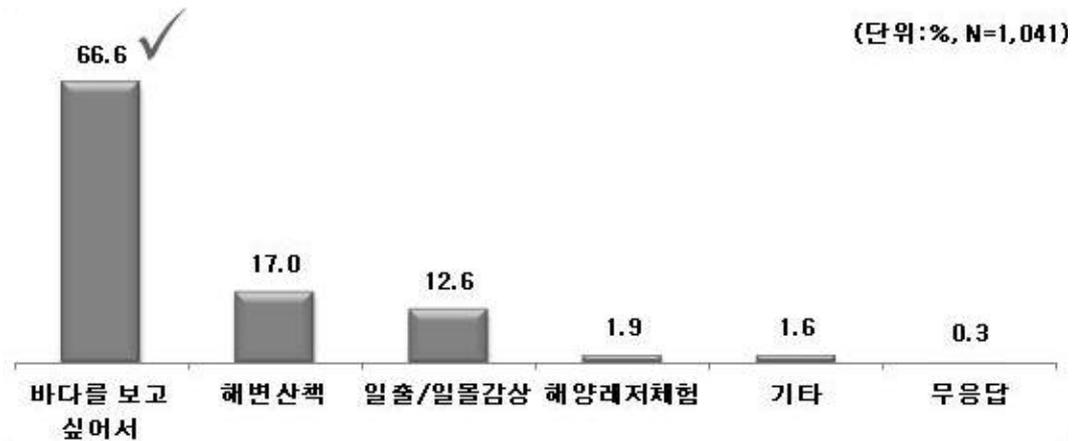
- 해수욕장과 관련해 바가지요금이 가장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5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결한 환경(48.6%), 무질서와 불법행위(45.9%)에 불만을 느낀다는 응답도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음(1+2+3순위 중복응답기준).
- 한편 1순위 기준으로는 무질서와 불법행위(22.3%), 바가지요금(21.0%)에 대한 불만이 높았음. 그 외 기초시설의 미비(38.8%), 이용자의 무질서 및 소란(30.9%), 숙박서비스 불편(20.0%), 교통접근성 불편(17.7%), 해수욕장 주차시설 미흡(17.1%), 해수욕장 안전시설 미흡(13.9%), 해수욕장 위락시설 미비(8.1%) 등의 요인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 방문 시 불만족 요소

- 여름이 아닌 계절에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다를 보고 싶어서 방문한다는 응답이 66.6%로 가장 높았으며, 해변산책(17.0%), 일출/일몰감상(12.6%), 해양레저체험(1.9%) 순으로 나타났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수욕장 이용의 다계절화를 위해서는 여름 이외의 계절에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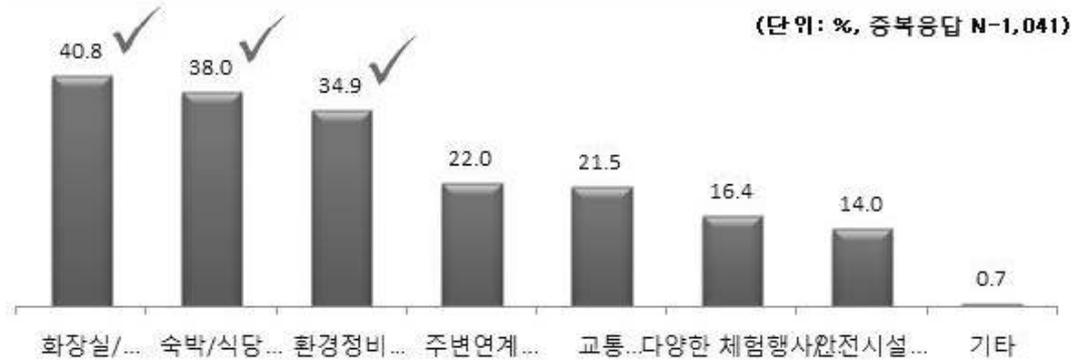
을 방문하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발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음.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여름철 외에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이유

- 해수욕장의 연중 이용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요소로 화장실/식수대 등 기본시설을 꼽은 응답이 40.8%, 숙박/식당 편의시설이라는 응답이 38.0%로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수욕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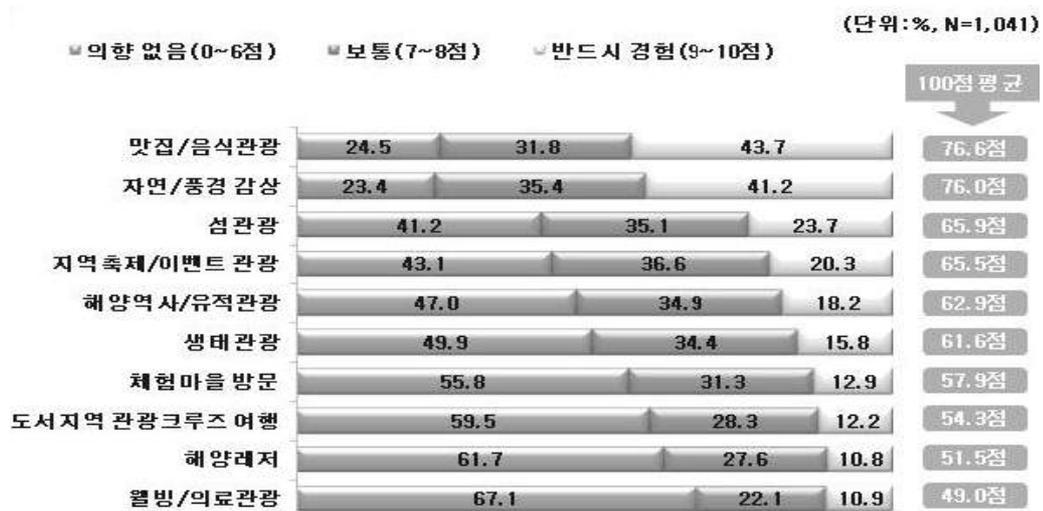
- 다수의 응답자가 해수욕장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해 해수욕장 이용의 다계절화가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음. 그 외에도 해수욕장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정비(34.9%), 주변과 연계된 관광시설의 개발(22.0%), 교통 접근성 제고(21.5%), 다양한 체험행사/해양레저교육 실시(16.4%), 안전시설의 확보(14.0%) 등이 필요함.
- 앞으로 해수욕장을 재방문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3년 이내 방문하겠다는 의향이 71.2점, 2년 내는 69.2점, 1년 내는 66.0점으로 방문 의향이 대체적으로 높았음. 한편 재방문 여부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확신도)를 감안하여 방문 의향을 추정할 경우 3년 이내 재방문하겠다는 응답자는 26.9%, 2년 이내 재방문 응답자는 24.5%, 1년 이내라는 방문자는 26.5%였음.

- 이와 같은 재방문 확신도 추정은 재방문 확실층의 기준을 80% 이상의 재방문 의향이 있고, 재방문에 80%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재방문 가능 집단으로 보았을 때의 산출 결과, 2015년 상반기 현재 전국 만 19~69세 인구가 3,714만 5,465명이므로 3년 이내 해수욕장 재방문이 확실한 집단을 26.9%로 산정하면 향후 해수욕장 이용객 규모를 984만 8,365명으로 추정할 수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향후 3년 이내 해수욕장 방문 의향

- 향후 해수욕장을 방문했을 때 맛집/음식 관광(76.6점)과, 자연 및 풍경 감상(76.0점)이 가장 체험하고 싶은 활동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섬관광(65.9점), 지역축제 및 이벤트 관광(65.5점), 해양역사와 유적관광(62.9점) 등의 체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웰빙/의료관광(49.0점)과 해양레저활동(51.5점)은 상대적으로 활동 의향이 낮은 편인데, 이는 낮은 인지도와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친밀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자료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향후 해수욕장 방문시 희망하는 활동

4. 국내해수욕장 활성화 사례

1) 테마 유형별 해수욕장 소개

(1) 구조라 해수욕장

- 해안도로와 구조라 성지에 대한 경관을 연계한 아름다운 해수욕장

| 지역 | 추천/지정 | | | '09하계 방문객(천명) | 자원특징 |
|---|-------|-----|------------|------------------|--|
| | 지자체 | 일간지 | 우수 해수욕장 | | |
| 경남 거제 | 추천 | - | 08년 | 2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수같은 아름다운 해변 해금강 내도/외도 관광 해금강 해안도로 누릿길 구조라 성지 |
| 추천배경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 중기에 축성한 구조라 성지와 내도, 외도 등 이름난 명승지가 입지 내륙형 해안지대로 호수같이 조용한 분위기, 서쪽 해안 효자의 전설이 얽힌 윤돌섬 입지 유람선을 이용, 내도·외도를 비롯하여 해금강 등 관광 국토해양부 지정 아름다운 해안누릿길 지정(해금강 해안도로) | | | | | |
| 해수욕장 이미지 | | | | | |
|  | | | | | |

(2)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 조약돌 해변과 바람의 언덕에 풍차와 동백림 군락이 아름다운 해수욕장

| 지역 | 추천/지정 | | | '09하계 방문객(천명) | 자원특징 |
|--|-------|-----|------------|------------------|--|
| | 지자체 | 일간지 | 우수 해수욕장 | | |
| 경남 거제 | 추천 | 2회 | - | 3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연기념물 동백림 군락 조약돌 해변 바람의 언덕 |
| 추천배경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3km의 주위 해안을 따라 펼쳐진 천연기념물 제233호인 동백림 야생 군락지 형성 동백꽃은 2월 하순경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만개한 모습을 보자면 3월 중순이 최적임 봄, 가을에는 해금강을 비롯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상관광객이 모여듦 몽돌이라 불리는 조약돌이 길이 약 1.2km, 폭 50m, 면적 3만km²에 펼쳐져 있는 해변의 풍경이 독특함 | | | | | |
| 해수욕장 이미지 | | | | | |
|  | | | | | |

(3) 함평 돌머리 해변

- 인공해수욕장의 석양과 해수돌썰미를 특화한 테마해수욕장

| 지역 | 추천/지정 | | | '09하계 방문객(천명) | 자원특징 |
|-------|-------|-----|------------|------------------|--|
| | 지자체 | 일간지 | 우수 해수욕장 | | |
| 전남 함평 | 추천 | 3회 | '06년 | 9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돌썰 • 인공해수풀장 • 갯벌생태체험 |

추천배경

- 조수 간만의 차가 커 썰물 때를 대비하여 해변가 인공 해수풀장을 마련해 놓았음
- 해수돌썰이라 하여 유황성분이 많은 돌을 불에 달구어 바닷물 속에 넣고 썰질하는 곳으로 유명
- 갯벌에는 낙지·게·조개·해초류가 많아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
-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해수욕장 왼쪽 일대에서 나는 글은 맛과 질이 뛰어난

해수욕장 이미지



2) 해수욕장 이용활성화 사례

(1)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예시

- 해수욕장의 공공디자인 개선 차원에서 해수욕장의 시설, 환경조건, 금지구역 등을 표기하는 깃발, 간판 등을 제작하여 배포



(2) 공공미술 설치사업 예시

- 해수욕장공공미술 설치사업은 해수욕장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을 활용하여 해수욕장에 경관포인트를 형성하여 방문객의 유입을 증대시키도록 함



(3) 해수욕장 경관시설 조성사업 예시

- 해수욕장의 다계절화를 추구하고 해수욕장을 해수욕활동 이외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경관을 정비하고 관광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4) 축제 및 이벤트 지원사업 예시

- 해수욕장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해수욕장 내 다양한 해양레저 이벤트 개최 지원하기 위하여 해수욕장별 백사장 공간 및 배후 관광자원 등을 고려한 이벤트 개최



(5) 환경/생태 교육사업 예시

- 해수욕장 성수기/비수기를 활용하여 해양관련 환경단체나 어촌체험마을 등이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해양관련 환경단체는 해수욕장 환경정화의 날(연안청소)이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태교실을 운영함



(6)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공원화 사업 예시

- 해수욕장 공원화를 위하여 해변구역의 양빈과 더불어 배후공간에 캠핑이나 숙박시설 조성, 해변산책로 정비 등 해수욕장 공간 전체를 리모델링함⁸⁾



8) 국토해양부(2011), “해변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수욕장 정보활용방안 연구” 에서 요약 재정리

03

무창포 해수욕장 특성과 과제

1. 충남 해수욕장 현황분석

1) 충남 지정해수욕장 현황

- 충남 지정해수욕장 현황은 보령시가 2개, 당진시가 2개, 서천군 1개, 태안군 30개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태안군 해수욕장의 경우 전체 해수욕장을 일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지정 해수욕장은 35개소이며 미지정 해수욕장이 16개소이고, 이중 지정해수욕장 중 자료가 없는 당진시 왜목해수욕장과 미지정 해수욕장 중 자료가 없는 보령시 저두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지정이 해제된 보령시 장안 해수욕장, 태안군 장돌해수욕장, 사목해수욕장을 제외한 49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임.

총괄 조사대상 해수욕장의 분포 현황

| 구분 | 총계 | 보령 | 당진 | 서천군 | 태안군 |
|-----|----|----|----|-----|-----|
| 합계 | 49 | 17 | 1 | 1 | 30 |
| 지정 | 34 | 2 | 1 | 1 | 30 |
| 미지정 | 15 | 15 | | | |

2) 전국 해수욕장 이용성향 분석

(1) 해수욕장 이용여부와 목적

- 2015-2016년에 해수욕장을 이용한 응답자는 총 500명으로 전체 응답의 71.4%가 해수욕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 충남의 해수욕장을 이용한 응답자는 총 응답자의 30.6%인 214명이었으며, 해수욕장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객은 전체 응답자의 28.6%인 200명이 해수욕장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음.

충남 지정해수욕장 현황

| 구분 연번 | 해수욕장명 | 관할 지자체 | | 지정여부 | 개장기간 | | 이용객(명) | 비고 |
|----------|-------|--------|-----|------|-------|-------|------------|-----|
| | | 광역 | 기초 | | 개장일 | 폐장일 | | |
| | 35개소 | | | | | | 14,566,398 | |
| 1 | 대전 | 충청남도 | 보령시 | 지정 | 06.20 | 08.23 | 9,113,800 | |
| 2 | 무창포 | 충청남도 | 보령시 | 지정 | 06.27 | 08.16 | 1,019,840 | |
| 3 | 왜목마을 | 충청남도 | 당진시 | 지정 | 07.11 | 08.16 | 71,483 | |
| 4 | 난지섬 | 충청남도 | 당진시 | 지정 | 07.11 | 08.16 | 18,444 | |
| 5 | 춘장대 | 충청남도 | 서천군 | 지정 | 06.27 | 08.16 | 2,175,550 | |
| 6 | 기지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50,830 | |
| 7 | 꽃지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200,285 | |
| 8 | 빛개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42,800 | |
| 9 | 방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83,440 | |
| 10 | 백사장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64,140 | |
| 11 | 삼봉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142,041 | |
| 12 | 새별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39,930 | |
| 13 | 안면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48,810 | |
| 14 | 두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42,620 | |
| 15 | 바람아래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17,260 | |
| 16 | 장삼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19,800 | |
| 17 | 곰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29,940 | |
| 18 | 달산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40,250 | |
| 19 | 마검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51,850 | |
| 20 | 몽산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220,670 | |
| 21 | 청포대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94,690 | |
| 22 | 갈음이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27,250 | |
| 23 | 연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84,670 | |
| 24 | 구름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43,840 | |
| 25 | 만리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356,700 | |
| 26 | 방주골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38,410 | |
| 27 | 어은돌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29,540 | |
| 28 | 의항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40,140 | |
| 29 | 천리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97,130 | |
| 30 | 파도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27,710 | |
| 31 | 구례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39,805 | |
| 32 | 신두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100,790 | |
| 33 | 학암포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70,970 | |
| 34 | 꾸지나무골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07.01 | 08.23 | 20,970 | |
| 35 | 통계 | 충청남도 | 태안군 | 지정 | | | | 미운영 |

이용여부 및 이용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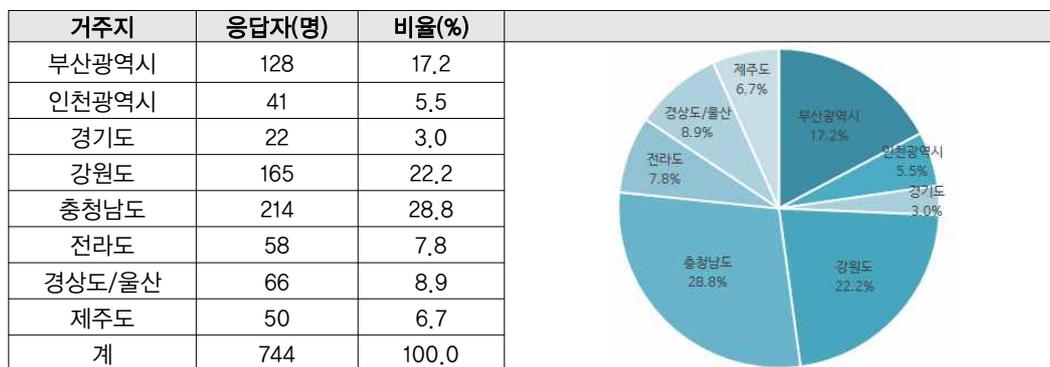


- 해수욕장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바가지요금이 심해서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접근성 불편 16.5%, 불결한 환경(쓰레기, 수질 등) 이 11.0% 등을 꼽았음.

(2) 해수욕장 방문지역과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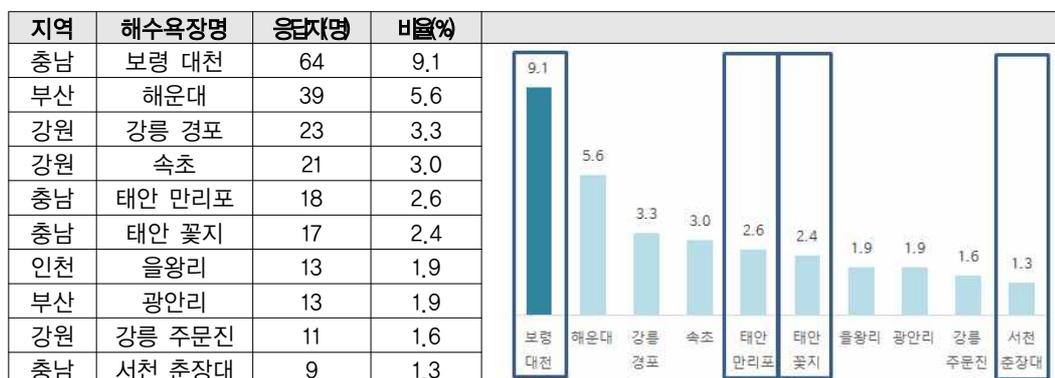
- 2015-2016년에 방문한 해수욕장의 지역은 전체응답자 중 28.8%인 214명이 방문하였다고 응답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가 22.2%인 165명, 부산광역시 17.2%인 128명, 경상도/울산이 8.9%인 66명으로 나타났음.

방문해수욕장 지역



- 가장 최근에 방문한 해수욕장에 대한 질문에 전국에 분포한 301개 해수욕장 중 가장 많이 방문한 해수욕장은 충남의 대천해수욕장으로 전체 응답자의 9.1%가 방문했다고 응답하였음.
- 두 번째로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5.6%인 39명이 방문하였다고 응답되었으며, 강릉 경포 3.3%, 속초 3.0%, 충남 만리포 2.6% 등의 순임. 10위권까지의 해수욕장 방문한 해수욕장을 살펴보면 충남의 해수욕장은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태안 꽃지, 서천 춘장대 등 4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음.

방문해수욕장 지역



주 : 중복응답

- 거주지별 방문 해수욕장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경포, 대천, 꽃지 등 대부분 유명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방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인천, 대구 등은 지역에 위치하거나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해수욕장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되었음.
- 충남의 경우 대천, 만리포, 꽃지, 무창포, 몽산포 등 지역내 해수욕장의 방문이 매우 높았으며, 충남 주변지역인 대전광역시도 대천해수욕장이 30.0%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 춘장대해수욕장 25.0%, 세종시는 대천해수욕장 50.0%를 많이 방문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방문하는 해수욕장 중 대천해수욕장이 2위로 응답되어 대천해수욕장이 방문이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거주지별 방문 해수욕장 교차분석 결과

| 지역 | 응답자 | | 1위 | | 2위 | | 3위 | | 4위 | | 5위 | |
|----|-----|---------|-------|---------|--------|---------|--------|---------|--------|---------|---------|---------|
| | 빈도 | 비중 | 명칭 | 비중 | 명칭 | 비중 | 명칭 | 비중 | 명칭 | 비중 | 명칭 | 비중 |
| 서울 | 112 | (22.4) | 경포 | (9.8%) | 대천 | (8.0%) | 꽃지 | (7.1%) | 해운대 | (6.3%) | 속초 | (5.4%) |
| 부산 | 30 | (6.0) | 해운대 | (40.0%) | 부산송도 | (10.0%) | 광안리 | (10.0%) | 일광 | (6.7%) | 다대포 | (6.7%) |
| 대구 | 13 | (2.6) | 영일대 | (15.4%) | 다대포 | (7.7%) | 태종대 | (7.7%) | 송정 | (7.7%) | 해운대 | (7.7%) |
| 인천 | 19 | (3.8) | 을왕리 | (21.1%) | 송정 | (5.3%) | 마시안 | (5.3%) | 선녀바위 | (5.3%) | 공평리 | (5.3%) |
| 광주 | 14 | (2.8) | 대천 | (21.4%) | 해운대 | (14.3%) | 보성울포 | (14.3%) | 학동몽돌 | (14.3%) | 고창구시포 | (7.1%) |
| 대전 | 10 | (2.0) | 대천 | (30.0%) | 광안리 | (10.0%) | 부산송정 | (10.0%) | 해운대 | (10.0%) | 정동진 | (10.0%) |
| 울산 | 5 | (1.0) | 울산일산 | (60.0%) | 해운대 | (20.0%) | 울산주전몽돌 | (20.0%) | - | - | - | - |
| 경기 | 79 | (15.8) | 속초 | (13.9%) | 대천 | (10.1%) | 경포 | (7.6%) | 정동진 | (6.3%) | 주문진 | (6.3%) |
| 강원 | 12 | (2.4) | 경포 | (33.3%) | 해운대 | (8.3%) | 금진 | (8.3%) | 망상 | (8.3%) | 속초 | (8.3%) |
| 충북 | 7 | (1.4) | 정동진 | (14.3%) | 경포 | (14.3%) | 주문진 | (14.3%) | 대천 | (14.3%) | 학암포 | (14.3%) |
| 충남 | 150 | (30.0) | 대천 | (24.0%) | 만리포 | (8.7%) | 꽃지 | (4.7%) | 무창포 | (3.3%) | 몽산포 | (3.3%) |
| 전북 | 12 | (2.4) | 춘장대 | (25.0%) | 해운대 | (16.7%) | 대천 | (16.7%) | 안면해변 | (8.3%) | 구시포 | (8.3%) |
| 전남 | 6 | (1.2) | 검은모래 | (33.3%) | 신지명사립리 | (16.7%) | 여수몽돌 | (16.7%) | 여수모사금 | (16.7%) | 해남땅끝송호 | (16.7%) |
| 경북 | 5 | (1.0) | 영덕고래불 | (20.0%) | 포항삼정 | (20.0%) | 거제망치 | (20.0%) | 통영죽도 | (20.0%) | 기타 | (20.0%) |
| 경남 | 24 | (4.8) | 광안리 | (16.7%) | 해운대 | (12.5%) | 부산송도 | (8.3%) | 거제농소몽돌 | (8.3%) | 상주상모래비치 | (8.3%) |
| 세종 | 2 | (0.4) | 대천 | (50.0%) | 화진포 | (50.0%) | - | - | - | - | - | - |
| 전체 | 500 | (100.0) | 대천 | (9.1%) | 해운대 | (5.6%) | 경포 | (3.3%) | 속초 | (3.0%) | 만리포 | (2.6%) |

주 : 중복응답

대구 : 망상, 땅 송호, 장사, 대진, 송도, 화진, 거제학동몽돌(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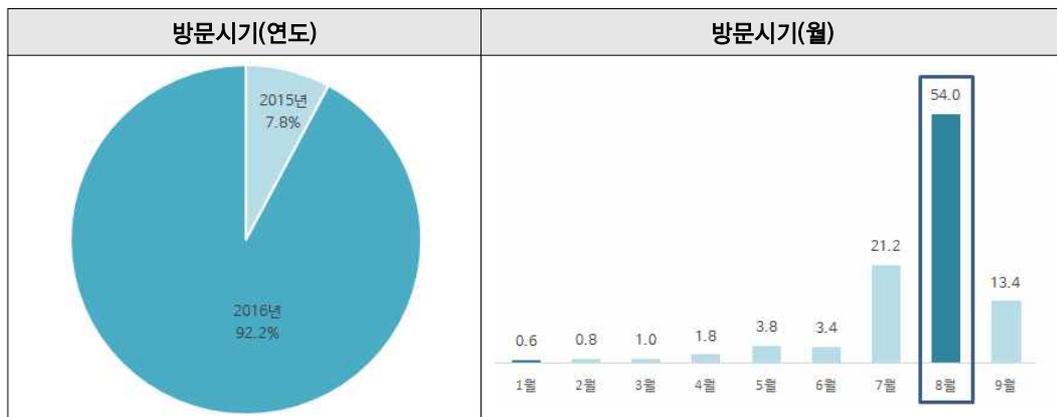
인천 : 정동진, 주문진, 추암, 임원, 속초, 대천, 몽산포, 만리포, 구지나무골, 상주상모래비치(5.3%)

-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충남 보령의 대천, 무창포와** 태안의 만리포, 꽃지 등의 유명한 해수욕장의 경우 전국에서 많은 방문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특히 대전, 전북, 서울, 경기 등의 충남을 둘러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의 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3) 해수욕장 방문시기와 동반자 및 방문목적

- 최근에 해수욕장을 시기는 전체응답자의 92.2%인 461명이 2016년에 방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015년에 방문했다는 응답은 7.8%로 나타났음. 월별로는 8월에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4.0%로 가장 많았으며, 7월 방문은 21.2%, 9월 방문이 13.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

방문시기



- 2015년에 방문한 응답자의 56.4%가 8월에 방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015년 방문객은 7,8,9월에 방문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2016년의 방문자는 8월 방문이 53.8%, 7월 방문이 20.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7, 8, 9월 방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2015년과 비교하여 1월부터 6월까지 꾸준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방문연도 및 월 교차분석 결과

| 구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전체 |
|-------|-------|--------|--------|--------|--------|--------|--------|---------|---------|---------|----------|
| 2015년 | 빈도(명) | 0 | 0 | 0 | 2 | 0 | 0 | 10 | 22 | 5 | 39 |
| | 비율(%) | (0.0%) | (0.0%) | (0.0%) | (5.1%) | (0.0%) | (0.0%) | (25.6%) | (56.4%) | (12.8%) | (100.0%) |
| 2016년 | 빈도(명) | 3 | 4 | 5 | 7 | 19 | 17 | 96 | 248 | 62 | 461 |
| | 비율(%) | (0.7%) | (0.9%) | (1.1%) | (1.5%) | (4.1%) | (3.7%) | (20.8%) | (53.8%) | (13.4%) | (100.0%) |
| 전체 | 빈도(명) | 3 | 4 | 5 | 9 | 19 | 17 | 106 | 270 | 67 | 500 |
| | 비율(%) | (0.6%) | (0.8%) | (1.0%) | (1.8%) | (3.8%) | (3.4%) | (21.2%) | (54.0%) | (13.4%) | (100.0%) |

- 해수욕장을 방문할 때 누구와 동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가족이 54.3%가 가족과 동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친구가 26.9%, 연인이 8.9%, 직장, 학교, 종교단체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해수욕장을 방문한 목적은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수욕과 수영이 31.0%, 주변관광지 방문 7.4%, 해변캠핑 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동반자 및 방문목적



- 응답자가 방문한 해수욕장의 이용목적을 교차 분석한 결과 지역과 무관하게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목적은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을 꼽았으며 해수욕과 수영, 주변관광지 방문 등을 꼽았음.

방문해수욕장 이용목적 교차분석 결과

| 구분 | |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 | 해수욕과 수영 | 해양레저활동 (모터보트 탑승/낚시) | 해변캠핑 | 음식관광 수산물구매 | 축제참가 | 주변관광지 방문 | 기타 | 전체 |
|--------|------|--------------|---------|---------------------|--------|------------|--------|----------|--------|----------|
| 부산 | 빈도 | 60 | 34 | 6 | 4 | 3 | 4 | 14 | 3 | 128 |
| | (비중) | (46.9%) | (26.6%) | (4.7%) | (3.1%) | (2.3%) | (3.1%) | (10.9%) | (2.3%) | (100.0%) |
| 인천 | 빈도 | 26 | 6 | 3 | 1 | 3 | 1 | - | 1 | 41 |
| | (비중) | (63.4%) | (14.6%) | (7.3%) | (2.4%) | (7.3%) | (2.4%) | - | (2.4%) | (100.0%) |
| 경기 | 빈도 | 11 | 6 | 3 | 1 | - | - | 1 | - | 22 |
| | (비중) | (50.0%) | (27.3%) | (13.6%) | (4.5%) | - | - | (4.5%) | - | (100.0%) |
| 강원 | 빈도 | 89 | 52 | 4 | 4 | 4 | 2 | 9 | 1 | 165 |
| | (비중) | (53.9%) | (31.5%) | (2.4%) | (2.4%) | (2.4%) | (1.2%) | (5.5%) | (0.6%) | (100.0%) |
| 충남 | 빈도 | 100 | 67 | 5 | 10 | 7 | 7 | 15 | 3 | 214 |
| | (비중) | (46.7%) | (31.3%) | (2.3%) | (4.7%) | (3.3%) | (3.3%) | (7.0%) | (1.4%) | (100.0%) |
| 전라도 | 빈도 | 30 | 16 | 3 | 1 | - | - | 8 | - | 58 |
| | (비중) | (51.7%) | (27.6%) | (5.2%) | (1.7%) | - | - | (13.8%) | - | (100.0%) |
| 경상도/울산 | 빈도 | 27 | 22 | 4 | 1 | 5 | - | 6 | 1 | 66 |
| | (비중) | (40.9%) | (33.3%) | (6.1%) | (1.5%) | (7.6%) | - | (9.1%) | (1.5%) | (100.0%) |
| 제주도 | 빈도 | 28 | 10 | 3 | 1 | 1 | - | 7 | - | 50 |
| | (비중) | (56.0%) | (20.0%) | (6.0%) | (2.0%) | (2.0%) | - | (14.0%) | - | (100.0%) |
| 전체 | 빈도 | 371 | 213 | 31 | 23 | 23 | 14 | 60 | 9 | 744 |
| | (비중) | (49.9%) | (28.6%) | (4.2%) | (3.1%) | (3.1%) | (1.9%) | (8.1%) | (1.2%)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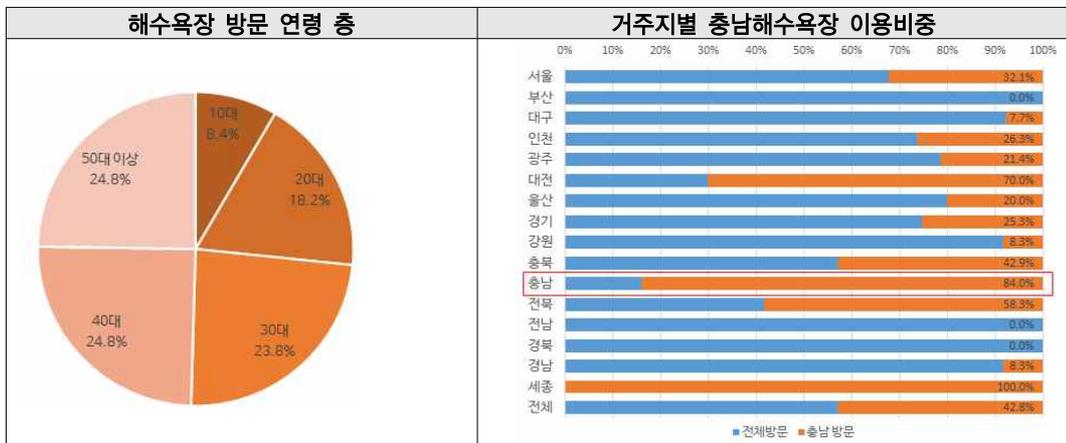
주 : 방문해수욕장 중복응답

3) 충남 해수욕장 이용성향 분석

(1) 해수욕장 선택이용 이용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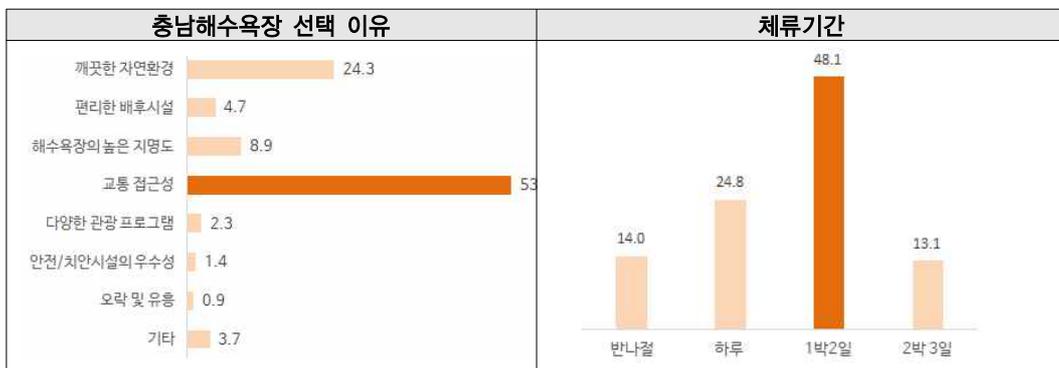
- 충남의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연령층은 40대와 50대가 24.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3.8%, 20대는 18.2% 등으로 나타났음. 거주지별 충남해수욕장의 이용 비중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42.8%가 충남의 해수욕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응답자의 84.0%가 충남 해수욕장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전은 70.0%, 세종시 100%, 전북 58.3%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충남과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음.

충남 해수욕장 방문 연령



- 충남의 해수욕장을 선택한 이유는 교통접근성이 53.7%로 가장 높았으며, 깨끗한 자연환경이 24.3%, 해수욕장의 높은 지명도가 8.9%로 응답되었음. 충남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편리한 충남 및 주변지역 주민의 비중이 높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충남 해수욕장 선택이유 및 체류기간



- 충남의 해수욕장을 방문한 응답자의 체류기간은 1박 2일이 48.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하루 24.8%, 반나절 14.0%로 나타났다.
- 충남의 해수욕장 방문 목적을 살펴보면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이 전체 응답의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해수욕과 수영이 22.4%, 주변 관광지 방문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충남의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연령층이 4-50대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활동적인 해수욕 및 수영, 해양레저 등의 활동보다는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 등의 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됨.

충남 해수욕장 방문 목적



주 : 중복응답

- 충남의 해수욕장별 이용목적은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별로 이용목적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한 43.9%의 응답자는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을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수욕과 수영이 29.6%, 주변관광지 방문 8.2% 순으로 나타났다.
-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은 57.1%가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을 꼽았으며 해수욕과 수영이 23.8%, 음식관광 및 수산물구매가 14.3%로 응답되었음.
- 태안의 만리포와 꽃지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응답자의 63.0%, 50.0%는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을 이용목적으로 꼽았으며, 각각 17.4%, 22.9%가 해수욕장과 수영을 이용목적으로 꼽았음.

방문 해수욕장별 이용목적 교차분석 결과

| 구분 | |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 | 해수욕과 수영 | 해양레저활동 (모터보트 탐승/낚시) | 해변캠핑 | 음식관광 수산물구매 | 축제참가 | 주변관광지 방문 | 기타 | 전체 |
|-----|------|-----------------|------------|---------------------------|---------|---------------|---------|-------------|--------|----------|
| 당진 | 빈도 | 3 | 4 | - | - | - | - | 1 | - | 8 |
| 난지도 | (비중) | (37.5%) | (50.0%) | - | - | - | - | (12.5%) | - | (100.0%) |
| 서천 | 빈도 | 12 | 5 | - | - | 3 | - | 1 | - | 21 |
| 춘장대 | (비중) | (57.1%) | (23.8%) | - | - | (14.3%) | - | (4.8%) | - | (100.0%) |
| 서산 | 빈도 | - | 1 | - | - | - | - | - | - | 1 |
| 벌천포 | (비중) | - | 100.0 | - | - | - | - | - | - | (100.0%) |
| 보령 | 빈도 | 5 | - | - | - | - | 1 | - | - | 8 |
| 용두 | (비중) | (83.3%) | - | - | - | - | (16.7%) | - | - | (100.0%) |
| 보령 | 빈도 | 43 | 29 | 4 | 3 | 5 | 4 | 8 | 2 | 98 |
| 대천 | (비중) | (43.9%) | (29.6%) | (4.1%) | (3.1%) | (5.1%) | (4.1%) | (8.2%) | (2.0%) | (100.0%) |
| 보령 | 빈도 | 2 | - | - | - | - | - | - | - | 2 |
| 오봉산 | (비중) | (100.0%) | - | - | - | - | - | - | - | (100.0%) |
| 보령 | 빈도 | 2 | - | - | - | - | - | - | - | 2 |
| 원산도 | (비중) | (100.0%) | - | - | - | - | - | - | - | (100.0%) |
| 보령 | 빈도 | 2 | 2 | - | - | - | 1 | - | - | 5 |
| 독산 | (비중) | (40.0%) | (40.0%) | - | - | - | (20.0%) | - | - | (100.0%) |
| 보령 | 빈도 | 3 | - | - | - | - | - | - | - | 3 |
| 장안 | (비중) | (100.0%) | - | - | - | - | - | - | - | (100.0%) |
| 보령 | 빈도 | 11 | 4 | - | - | - | 2 | 1 | - | 18 |
| 무창포 | (비중) | (61.1%) | (22.2%) | - | - | - | (11.1%) | (5.6%) | - | (100.0%) |
| 태안바 | 빈도 | - | 1 | - | - | - | - | - | - | 1 |
| 람아래 | (비중) | - | (100.0%) | - | - | - | - | - | - | (100.0%) |
| 태안 | 빈도 | - | - | - | - | - | - | 1 | - | 1 |
| 장돌 | (비중) | - | - | - | - | - | - | (100.0%) | - | (100.0%) |
| 태안 | 빈도 | 3 | - | 1 | - | - | - | - | - | 4 |
| 장삼포 | (비중) | (75.0%) | - | (25.0%) | - | - | - | - | - | (100.0%) |
| 태안 | 빈도 | 3 | 1 | - | - | - | - | - | - | 4 |
| 연포 | (비중) | (75.0%) | (25.0%) | - | - | - | - | - | - | (100.0%) |
| 태안 | 빈도 | 1 | - | - | - | - | - | - | - | 1 |
| 원안 | (비중) | (100.0%) | - | - | - | - | - | - | - | (100.0%) |
| 태안 | 빈도 | 1 | - | - | - | - | - | - | - | 1 |
| 갈음이 | (비중) | (100.0%) | - | - | - | - | - | - | - | (100.0%) |
| 태안 | 빈도 | 2 | - | - | - | - | - | - | - | 2 |
| 달산포 | (비중) | (100.0%) | - | - | - | - | - | - | - | (100.0%) |
| 태안곰 | 빈도 | 1 | 1 | - | - | - | - | - | - | 2 |
| 섬 | (비중) | (50.0%) | (50.0%) | - | - | - | - | - | - | (100.0%) |
| 태안 | 빈도 | 2 | - | - | - | - | - | 2 | - | 4 |
| 마검포 | (비중) | (50.0%) | - | - | - | - | - | (50.0%) | - | (100.0%) |
| 태안 | 빈도 | 5 | 1 | - | 2 | 3 | - | 2 | - | 13 |
| 몽산포 | (비중) | (38.5%) | (7.7%) | - | (15.4%) | (23.1%) | - | (15.4%) | - | (100.0%) |
| 태안 | 빈도 | 5 | 4 | - | 1 | 1 | - | 1 | 1 | 13 |
| 청포대 | (비중) | (38.5%) | (30.8%) | - | (7.7%) | (7.7%) | - | (7.7%) | (7.7%) | (100.0%) |
| 태안 | 빈도 | 2 | - | 1 | - | - | - | 1 | - | 4 |
| 어은돌 | (비중) | (50.0%) | - | (25.0%) | - | - | - | (25.0%) | - | (100.0%) |

주 : 중복응답

충남해수욕장 방문목적 교차분석 결과(계속)

| 구분 | |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 | 해수욕과 수영 | 해양레저활동 (모터보트 탑승/낚시) | 해변캠핑 | 음식관광 수산물구매 | 축제참가 | 주변관광지 방문 | 기타 | 전체 |
|-----------------|------------|--------------------|---------------|---------------------------|--------------|---------------|-------------|--------------|-------------|----------------|
| 태안 만리포 | 빈도 (비중) | 29 (63.0%) | 8 (17.4%) | - - | 2 (4.3%) | 2 (4.3%) | 1 (2.2%) | 3 (6.5%) | 1 (2.2%) | 46 (100.0%) |
| 태안 의항 | 빈도 (비중) | 1 (100.0%) | - - | - - | - - | - - | - - | - - | - - | 1 (100.0%) |
| 태안 천리포 | 빈도 (비중) | 8 (72.7%) | 1 (9.1%) | 1 (9.1%) | - - | - - | 1 (9.1%) | - - | - - | 11 (100.0%) |
| 태안 파도리 | 빈도 (비중) | 1 (20.0%) | 2 (40.0%) | - - | - - | - - | - - | 2 (40.0%) | - - | 5 (100.0%) |
| 태안 밤개 | 빈도 (비중) | 1 (100.0%) | - - | - - | - - | - - | - - | - - | - - | 1 (100.0%) |
| 태안 백사장 | 빈도 (비중) | 7 (63.6%) | 1 (9.1%) | - - | 2 (18.2%) | - - | - - | 1 (9.1%) | - - | 11 (100.0%) |
| 태안 삼봉 | 빈도 (비중) | 3 (75.0%) | 1 (25.0%) | - - | - - | - - | - - | - - | - - | 4 (100.0%) |
| 안면 해변 | 빈도 (비중) | 12 (85.7%) | 2 (14.3%) | - - | - - | - - | - - | - - | - - | 14 (100.0%) |
| 태안 꽃지 | 빈도 (비중) | 24 (50.0%) | 11 (22.9%) | 2 (4.2%) | 2 (4.2%) | 3 (6.3%) | 2 (4.2%) | 4 (8.3%) | - - | 48 (100.0%) |
| 태안 투여 | 빈도 (비중) | 1 (100.0%) | - - | - - | - - | - - | - - | - - | - - | 1 (100.0%) |
| 태안 방포 | 빈도 (비중) | - - | 1 (100.0%) | - - | - - | - - | - - | - - | - - | 1 (100.0%) |
| 태안 샛별 | 빈도 (비중) | 1 (100.0%) | - - | - - | - - | - - | - - | - - | - - | 1 (100.0%) |
| 태안 기지포 | 빈도 (비중) | 2 (100.0%) | - - | - - | - - | - - | - - | - - | - - | 2 (100.0%) |
| 태안 구례포 | 빈도 (비중) | 2 (66.7%) | - - | - - | - - | - - | - - | 1 (33.3%) | - - | 3 (100.0%) |
| 태안 신두리 | 빈도 (비중) | 7 (53.8%) | 3 (23.1%) | - - | 1 (7.7%) | - - | - - | 2 (15.4%) | - - | 13 (100.0%) |
| 태안 학암포 | 빈도 (비중) | 3 (37.5%) | 3 (37.5%) | - - | 1 (12.5%) | 1 (12.5%) | - - | - - | - - | 8 (100.0%) |
| 태안 사목 | 빈도 (비중) | 1 (100.0%) | - - | - - | - - | - - | - - | - - | - - | 1 (100.0%) |
| 태안 음포 | 빈도 (비중) | 1 (100.0%) | - - | - - | - - | - - | - - | - - | - - | 1 (100.0%) |
| 태안 꾸지나 무골 | 빈도 (비중) | 1 (50.0%) | - - | - - | 1 (50.0%) | - - | - - | - - | - - | 2 (100.0%) |
| 충남 기타 | 빈도 (비중) | 1 (33.3%) | 2 (66.7%) | - - | - - | - - | - - | - - | - - | 3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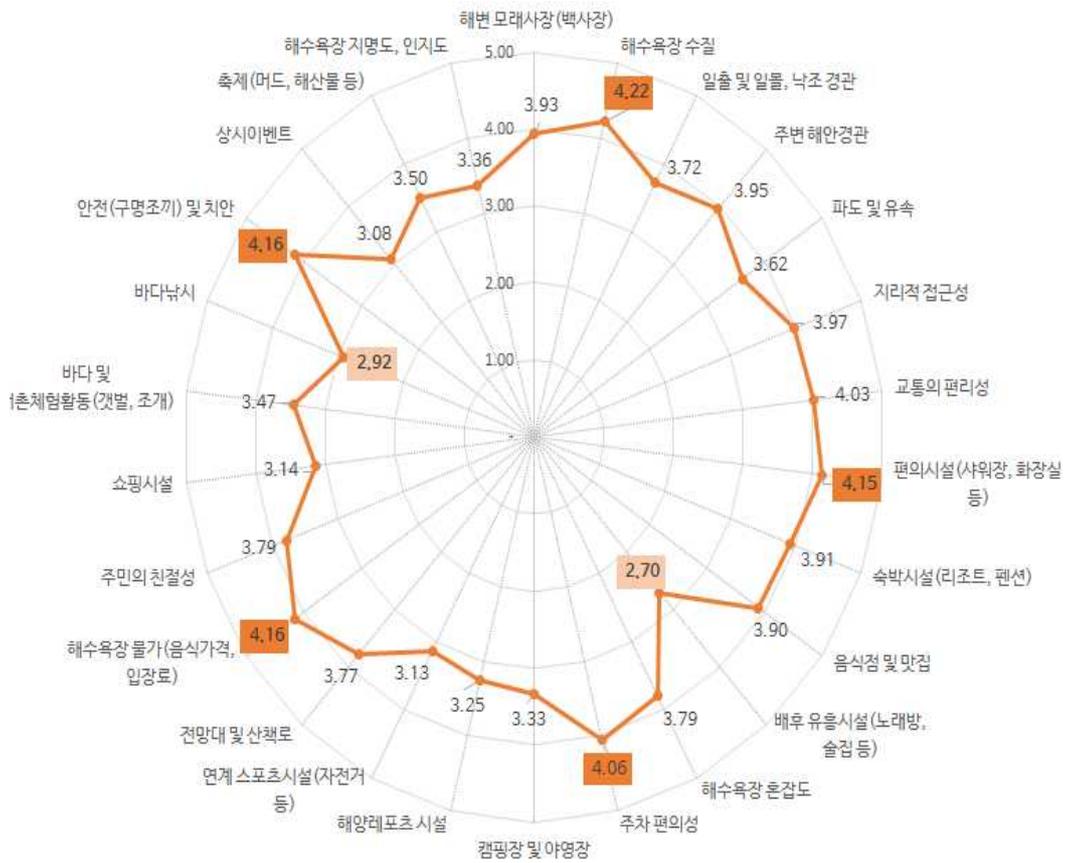
주 : 중복응답

(2) 해수욕장 선택속성별 중요도 : 방문전

- 충남의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전 항목별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해수욕장 수질이 4.22점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응답되었으며, 해수욕장 물가, 안전 및 치안이 4.16점, 주차편의성이 4.06점으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음.
- 중요성이 낮게 응답된 항목은 배후 유흥시설과 바다낚시로 각각 2.70점과 2.92점으로 응답되었음.

충남 해수욕장 선택속성별 중요도(방문전)

|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
| 해변 모래사장(백사장) | 3.93 | 0.6712 | 캠핑장 및 야영장 | 3.33 | 0.9530 |
| 해수욕장 수질 | 4.22 | 0.6894 | 해양레포츠 시설 | 3.25 | 0.9087 |
| 일출 및 일몰, 낙조 경관 | 3.72 | 0.7727 | 연계 스포츠시설(자전거 등) | 3.13 | 0.8784 |
| 주변 해안경관 | 3.95 | 0.7265 | 전망대 및 산책로 | 3.77 | 0.7640 |
| 파도 및 유속 | 3.62 | 0.7949 | 해수욕장 물가(음식가격, 입장료) | 4.16 | 0.7525 |
| 지리적 접근성 | 3.97 | 0.7563 | 주민의 친절성 | 3.79 | 0.7816 |
| 교통의 편리성 | 4.03 | 0.7927 | 쇼핑시설 | 3.14 | 0.9321 |
| 편의시설(샤워장, 화장실 등) | 4.15 | 0.7313 | 바다 및 어촌체험활동(갯벌, 조개) | 3.47 | 0.8916 |
| 숙박시설(리조트, 펜션) | 3.91 | 0.8562 | 바다낚시 | 2.92 | 0.9682 |
| 음식점 및 맛집 | 3.90 | 0.8076 | 안전(구명조끼) 및 치안 | 4.16 | 0.7830 |
| 배후 유흥시설(노래방, 술집 등) | 2.70 | 1.0590 | 상시이벤트 | 3.08 | 0.8658 |
| 해수욕장 혼잡도 | 3.79 | 0.7858 | 축제(머드, 해산물 등) | 3.50 | 0.8708 |
| 주차 편의성 | 4.06 | 0.7819 | 해수욕장 지명도, 인지도 | 3.36 | 0.9233 |



방문 해수욕장별 선택속성별 중요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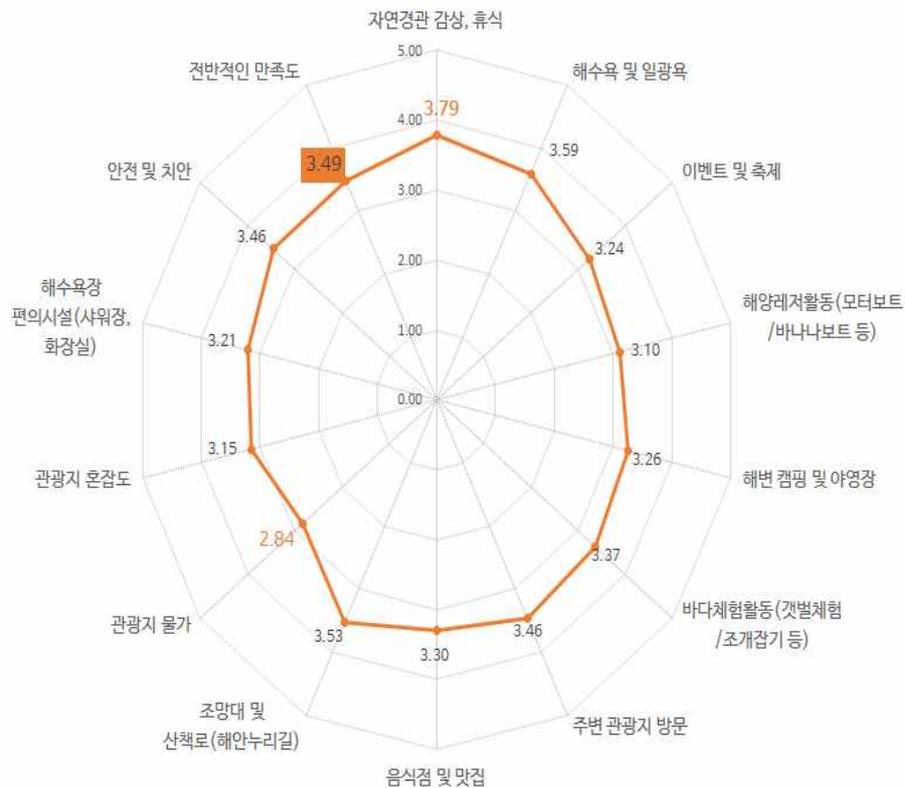
| 구분 | 빈도 | 1위 | | 2위 | | 3위 | |
|---------------|-----------|----------------|-------------|--------------|-------------|----------------|-------------|
| | | 항목 | 평균 | 항목 | 평균 | 항목 | 평균 |
| 당진 난지도 | 8 | 해수욕장 물가 | 4.50 | 주차편의성 | 4.38 | 안전 및 치안 | 4.38 |
| 서천 춘장대 | 21 | 해수욕장 물가 | 4.24 | 해수욕장수질 | 4.19 | 주차편의성 | 4.19 |
| 서산 벌천포 | 1 | 해수욕장 혼잡도 | 5.00 | 주차편의성 | 5.00 | 바다낚시 | 5.00 |
| 보령 용두 | 6 | 안전 및 치안 | 4.5 | 편의시설 | 4.33 | 해수욕장 수질 | 4.17 |
| 보령 대천 | 98 | 해수욕장 수질 | 4.28 | 안전 및 치안 | 4.13 | 해수욕장 물가 | 4.11 |
| 보령 호도 | 3 | 해양레포츠시설 | 4.00 | 전망대 및 산책로 | 4.00 | 주민의 친절성 | 4.00 |
| 보령 오봉산 | 2 | 해수욕장 수질 | 4.00 | 주변해안경관 | 4.00 | 지리적접근성 | 4.00 |
| 보령 원산도 | 2 | 해수욕장 수질 | 4.00 | 주변해안경관 | 4.00 | 지리적접근성 | 4.00 |
| 보령 독산 | 5 | 편의시설 | 4.60 | 바다 및 어촌체험활동 | 4.60 | 안전 및 치안 | 4.60 |
| 보령 장안 | 3 | 음식점 및 맛집 | 4.33 | 전망대 및 산책로 | 4.33 | 주민의 친절성 | 4.33 |
| 보령 무창포 | 18 | 해수욕장 수질 | 4.22 | 주차편의성 | 4.22 | 안전 및 치안 | 4.22 |
| 태안바람아래 | 1 | 교통의 편리성 | 5.00 | 숙박시설 | 5.00 | 해수욕장 혼잡도 | 5.00 |
| 태안 장돌 | 1 | 해수욕장 수질 | 5.00 | 해변 모래사장 | 4.00 | 주변 해안경관 | 4.00 |
| 태안 장삼포 | 4 | 주변해안경관 | 4.75 | 교통의 편리성 | 4.50 | 편의시설 | 4.50 |
| 태안 연포 | 4 | 주차편의성 | 4.25 | 해수욕장물가 | 4.25 | 해수욕장 수질 | 4.00 |
| 태안 원안 | 1 | 해변 모래사장 | 5.00 | 해수욕장수질 | 4.50 | 일출 및 낙조경관 | 5.00 |
| 태안 갈음이 | 1 | 해변 모래사장 | 5.00 | 해수욕장수질 | 5.00 | 지리적접근성 | 5.00 |
| 태안 달산포 | 2 | 주변해안경관 | 5.00 | 편의시설 | 5.00 | 숙박시설 | 5.00 |
| 태안곰섬 | 2 | 편의시설 | 4.50 | 해수욕장 | 4.50 | 안전 및 치안 | 4.50 |
| 태안 마검포 | 4 | 해수욕장 수질 | 4.50 | 주변 해안경관 | 4.50 | 주차편의성 | 4.50 |
| 태안 몽산포 | 13 | 해수욕장 수질 | 4.54 | 편의시설 | 4.46 | 주변해안경관 | 4.31 |
| 태안 청포대 | 13 | 안전 및 치안 | 4.23 | 주차편의성 | 4.15 | 해수욕장 혼잡도 | 4.15 |
| 태안 어은돌 | 4 | 해수욕장 수질 | 4.25 | 주변 해안경관 | 4.25 | 편의시설 | 4.25 |
| 태안만리포 | 46 | 해수욕장 물가 | 4.17 | 교통의 편리성 | 4.13 | 안전 및 치안 | 4.13 |
| 태안 의항 | 1 | 해변 모래사장 | 5.00 | 해수욕장 수질 | 5.00 | 일출 및 낙조경관 | 5.00 |
| 태안천리포 | 11 | 해수욕장 물가 | 4.27 | 해수욕장 수질 | 4.18 | 주변 해안경관 | 4.18 |
| 태안 파도리 | 5 | 해수욕장 수질 | 4.80 | 해수욕장 물가 | 4.60 | 편의시설 | 4.40 |
| 태안밭개 | 1 | 해수욕수질 | 4.00 | 일출 및 낙조경관 | 4.00 | 주변 해안경관 | 4.00 |
| 태안 백사장 | 11 | 주차 편의성 | 4.45 | 전망대 및산책로 | 4.27 | 해수욕장 수질 | 4.18 |
| 태안삼봉 | 4 | 해수욕장 물가 | 4.25 | 해수욕장 수질 | 4.00 | 일출 및 낙조경관 | 4.00 |
| 안면해변 | 14 | 해수욕장 수질 | 4.43 | 주변 해안경관 | 4.29 | 편의시설 | 4.29 |
| 태안꽃지 | 48 | 주차편의성 | 4.15 | 해수욕장 수질 | 4.15 | 해수욕장 물가 | 4.15 |
| 태안두어 | 1 | 해변모래사장 | 3.00 | 해수욕장 수질 | 3.00 | 일출 및 낙조경관 | 3.00 |
| 태안 방포 | 1 | 지리적 접근성 | 5.00 | 교통의 편리성 | 5.00 | 해수욕장 혼잡도 | 5.00 |
| 태안샛별 | 2 | 해수욕장 수질 | 2.0 | 주변 해안경관 | 4.00 | 지리적 접근성 | 4.00 |
| 태안기지포 | 2 | 주변 해안경관 | 4.50 | 주차편의성 | 4.50 | 해변모래사장 | 4.00 |
| 태안구례포 | 3 | 주변해안경관 | 4.33 | 지리적 접근성 | 4.33 | 교통의 편리성 | 4.33 |
| 태안신두리 | 13 | 해수욕장 수질 | 4.23 | 편의시설 | 4.23 | 안전 및 치안 | 4.23 |
| 태안학암포 | 8 | 안전 및 치안 | 4.38 | 해수욕장 물가 | 4.13 | 해수욕장 수질 | 4.00 |
| 태안 사목 | 1 | 해변모래사장 | 5.00 | 해수욕장 수질 | 5.00 | 주변 해안경관 | 5.00 |
| 태안음포 | 1 | 해수욕장 수질 | 5.00 | 주변 해안경관 | 5.00 | 지리적접근성 | 5.00 |
| 태안꾸지나무골 | 2 | 안전 및 치안 | 5.00 | 편의시설 | 4.00 | 숙박시설 | 4.00 |
| 충남기타 | 3 | 음식점 및 맛집 | 4.33 | 해수욕장 혼잡도 | 4.33 | 안전 및 치안 | 4.33 |

(3) 해수욕장 이용만족도와 재방문 여부

- 충남해수욕장을 방문한 응답자 중 해수욕장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3.48점(5점 만점)이며, 항목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자연경관 감상 및 휴식 항목(3.79점)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관광지 물가(2.84점)로 나타났다.

충남해수욕장 항목별 만족도

|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
| 자연경관 감상, 휴식 | 3.79 | 0.6972 | 음식점 및 맛집 | 3.30 | 0.8360 |
| 해수욕 및 일광욕 | 3.59 | 0.7368 | 조망대 및 산책로 (해안누리길) | 3.53 | 0.7671 |
| 이벤트 및 축제 | 3.24 | 0.7279 | 관광지 물가 | 2.84 | 0.8574 |
| 해양레저활동(모터보트/바 나나보트 등) | 3.10 | 0.6704 | 관광지 혼잡도 | 3.15 | 0.8826 |
| 해변 캠핑 및 야영장 | 3.26 | 0.7149 | 해수욕장 편의시설 (샤워장, 화장실) | 3.21 | 0.8778 |
| 바다체험활동(갯벌체험/조 개잡기 등) | 3.37 | 0.7747 | 안전 및 치안 | 3.46 | 0.7967 |
| 주변 관광지 방문 | 3.46 | 0.8026 | 전반적인 만족도 | 3.49 | 0.69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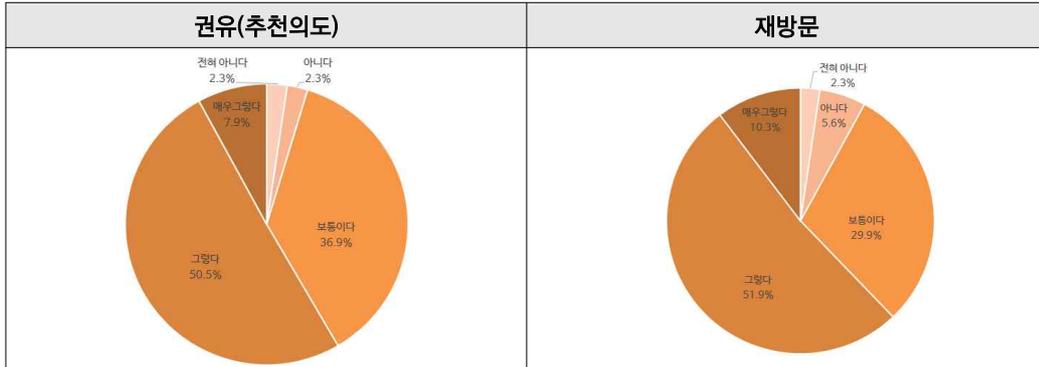
- 해수욕장별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연경관 감상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관광지 물가,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을 꼽았음.

방문 해수욕장별 만족도

| 구분 | 빈도 | 전반적 만족도 | 만족도 높은 항목 | | 만족도 낮은 항목 | |
|---------------|-----------|-------------|------------------|-------------|---------------|-------------|
| | | | 항목 | 평균 | 항목 | 평균 |
| 당진 난지도 | 8 | 3.13 | 자연경관감상 | 3.63 | 관광지물가 | 2.38 |
| 서천 춘장대 | 21 | 3.57 | 해수욕 및 일광욕 | 3.76 | 관광지물가 | 2.95 |
| 서산 별천포 | 1 | 3.00 | 자연경관감상 | 4.00 | 해수욕장 편의시설 | 2.00 |
| 보령 용두 | 6 | 3.83 | 자연경관감상 | 4.17 | 해양레저활동 | 3.17 |
| 보령 대천 | 98 | 3.46 | 자연경관감상 | 3.76 | 관광지물가 | 2.72 |
| 보령 호도 | 3 | 3.33 | 이벤트및축제 | 3.67 | 해수욕장편의시설 | 3.33 |
| 보령 오봉산 | 2 | 3.50 | 자연경관감상 | 4.00 | 해수욕장 편의시설 | 3.50 |
| 보령 원산도 | 2 | 3.50 | 자연경관감상 | 4.00 | 해수욕장 편의시설 | 3.50 |
| 보령 독산 | 5 | 4.00 | 자연경관감상 | 4.40 | 관광지물가 | 3.20 |
| 보령 장안 | 3 | 3.67 | 자연경관감상 | 4.33 | 해수욕장 편의시설 | 3.00 |
| 보령 무창포 | 18 | 3.50 | 자연경관감상 | 3.72 | 관광지 물가 | 2.89 |
| 태안바람아래 | 1 | 3.00 | 자연경관감상 | 4.00 | 관광지 물가 | 2.00 |
| 태안 장돌 | 1 | 3.00 | 해양레저활동 | 5.00 | 해수욕장 편의시설 | 2.00 |
| 태안 장삼포 | 4 | 3.75 | 조망대 및 산책로 | 4.50 | 관광지물가 | 3.00 |
| 태안 연포 | 4 | 3.75 | 자연경관감상 | 4.00 | 관광지물가 | 3.25 |
| 태안 원안 | 1 | 3.00 | 자연경관감상 | 4.00 | 안전 및 치안 | 3.00 |
| 태안 갈음이 | 1 | 3.00 | 자연경관감상 | 3.00 | 해수욕장편의시설 | 1.00 |
| 태안 달산포 | 2 | 5.00 | 자연경관감상 | 3.00 | 해수욕장편의시설 | 3.00 |
| 태안 곰섬 | 2 | 4.00 | 주변관광지 방문 | 4.50 | 관광지물가 | 3.00 |
| 태안 마검포 | 4 | 4.00 | 주변관광지 방문 | 4.50 | 해양레저활동 | 2.75 |
| 태안 동산포 | 13 | 3.62 | 자연경관 감상 | 3.85 | 관광지 물가 | 2.85 |
| 태안 청포대 | 13 | 3.46 | 자연경관 감상 | 3.85 | 해양레저활동 | 2.85 |
| 태안 어은돌 | 4 | 3.25 | 자연경관 감상 | 3.75 | 관광지물가 | 2.50 |
| 태안만리포 | 46 | 3.48 | 자연경관 감상 | 3.87 | 관광지물가 | 2.67 |
| 태안 의항 | 1 | 4.00 | 자연경관감상 | 5.00 | 안전 및 치안 | 3.00 |
| 태안천리포 | 11 | 3.64 | 주변관광지방문 | 4.00 | 관광지 물가 | 2.64 |
| 태안 파도리 | 5 | 3.40 | 바다체험활동 | 4.00 | 관광지 물가 | 3.20 |
| 태안 밧개 | 1 | 3.00 | 자연경관 감상 | 4.00 | 이벤트 및 축제 | 2.00 |
| 태안 백사장 | 11 | 3.45 | 자연경관 감상 | 3.91 | 해수욕장 편의시설 | 3.00 |
| 태안삼봉 | 4 | 3.00 | 관광지혼잡도 | 3.25 | 관광지물가 | 2.50 |
| 안면해변 | 14 | 3.71 | 자연경관 감상 | 4.00 | 관광지 물가 | 3.00 |
| 태안꽃지 | 48 | 3.54 | 자연경관 감상 | 3.92 | 관광지물가 | 2.65 |
| 태안두여 | 1 | 3.00 | - | - | - | - |
| 태안 방포 | 1 | 4.00 | 자연경관 감상 | 4.00 | 안전 및 치안 | 3.00 |
| 태안샛별 | 2 | 3.50 | 자연경관 감상 | 4.00 | 해수욕장 편의시설 | 3.50 |
| 태안기지포 | 2 | 4.50 | 자연경관 감상 | 4.50 | 해변캠핑 및 야영 | 3.00 |
| 태안구례포 | 3 | 3.33 | 자연경관 감상 | 3.33 | 주변 관광지 방문 | 2.33 |
| 태안신두리 | 13 | 3.62 | 주변 관광지 방문 | 3.92 | 관광지 물가 | 3.15 |
| 태안학암포 | 8 | 3.38 | 해수욕 및 일광욕 | 4.13 | 해양레저활동 | 2.63 |
| 태안 사목 | 1 | 4.00 | 자연경관 감상 | 5.00 | 관광지 물가 | 3.00 |
| 태안음포 | 1 | 4.00 | 자연경관 감상 | 5.00 | 해수욕장 편의시설 | 4.00 |
| 태안꾸지나무골 | 2 | 3.00 | 조망대 및 산책로 | 4.00 | 음식점 및 맛집 | 2.00 |
| 충남기타 | 3 | 3.67 | 자연경관 감상 | 3.67 | 해수욕 및 일광욕 | 2.67 |

- 충남 해수욕장을 타인에게 방문토록 권유하겠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50.5%가 그렇다. 7.9%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음. 이들의 재방문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51.9%, 매우 그렇다가 10.3%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음.

충남 해수욕장 재방문 및 추천의도



- 충남지역의 추천의도는 3.59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며, 재방문 여부는 3.62점으로 추천의도보다 재방문에 긍정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해수욕장별로 살펴보면 인지도가 높은 해수욕장의 경우는 추천과 재방문의향 모두 충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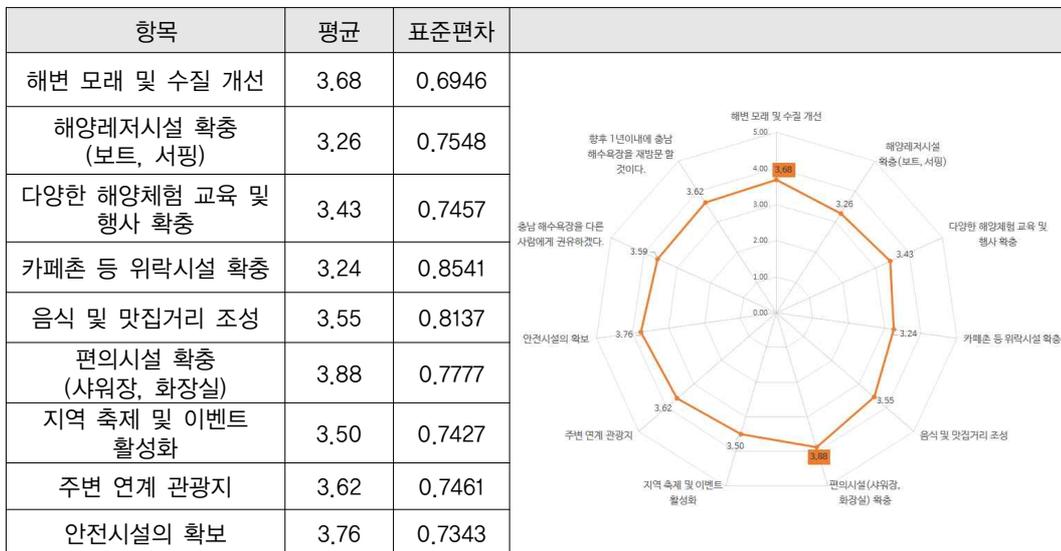
방문 해수욕장별 재방문 및 추천의도

| 구분 | 빈도 | 추천 | 재방문 | 구분 | 빈도 | 추천 | 재방문 |
|---------------|-----------|-------------|-------------|--------------|-----------|-------------|-------------|
| 당진 난지도 | 8 | 3.50 | 3.38 | 태안 어은돌 | 4 | 3.25 | 3.50 |
| 서천 춘장대 | 21 | 3.81 | 3.86 | 태안만리포 | 46 | 3.63 | 3.76 |
| 서산 벌천포 | 1 | 3.00 | 4.00 | 태안 의항 | 1 | 3.00 | 3.00 |
| 보령 용두 | 6 | 4.17 | 4.17 | 태안천리포 | 11 | 3.82 | 3.73 |
| 보령 대천 | 98 | 3.68 | 3.59 | 태안 파도리 | 5 | 3.80 | 4.00 |
| 보령 호도 | 3 | 3.67 | 3.33 | 태안 밧개 | 1 | 3.00 | 4.00 |
| 보령 오봉산 | 2 | 4.00 | 3.50 | 태안 백사장 | 11 | 3.45 | 3.73 |
| 보령 원산도 | 2 | 4.00 | 3.50 | 태안삼봉 | 4 | 3.00 | 3.00 |
| 보령 독산 | 5 | 4.20 | 4.20 | 안면해변 | 14 | 3.86 | 3.57 |
| 보령 장안 | 3 | 4.00 | 3.67 | 태안꽃지 | 48 | 3.73 | 3.79 |
| 보령 무창포 | 18 | 3.89 | 3.89 | 태안두여 | 1 | 3.00 | 3.00 |
| 태안바람아래 | 1 | 3.00 | 4.00 | 태안 방포 | 1 | 4.00 | 4.00 |
| 태안 장들 | 1 | 4.00 | 4.00 | 태안셋별 | 2 | 4.00 | 3.50 |
| 태안 장삼포 | 4 | 4.00 | 3.75 | 태안기지포 | 2 | 4.50 | 4.50 |
| 태안 연포 | 4 | 3.75 | 4.00 | 태안구례포 | 3 | 4.00 | 4.00 |
| 태안 원안 | 1 | 3.00 | 3.00 | 태안신두리 | 13 | 3.62 | 3.62 |
| 태안 갈음이 | 1 | 3.00 | 3.00 | 태안학암포 | 8 | 3.63 | 3.50 |
| 태안 달산포 | 2 | 5.00 | 5.00 | 태안 사목 | 1 | 5.00 | 5.00 |
| 태안 곰섬 | 2 | 3.50 | 4.00 | 태안음포 | 1 | 5.00 | 4.00 |
| 태안 마검포 | 4 | 4.25 | 4.50 | 태안꾸지나무골 | 2 | 3.00 | 2.50 |
| 태안 동산포 | 13 | 3.92 | 4.00 | 충남기타 | 3 | 3.67 | 3.67 |
| 태안 청포대 | 13 | 3.38 | 3.85 | 충남전체 | 214 | 3.59 | 3.62 |

(4) 해수욕장 필요시설

- 충남의 해수욕장에 방문한 방문객이 해수욕장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확충(3.88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시설의 확보(3.76점), 해변모래 및 수질개선(3.68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응답자가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체험할수 있는 필요 시설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필요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자원은 카페촌 등 위락시설 확충과 해양레저시설 확충 등으로 이는 해수욕장을 방문했을 때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부문으로 이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분석됨.

충남해수욕장 필요시설



- 각 해수욕장별 필요시설을 살펴보면 서천 춘장대, 충남 대천, **보령 무창포**, 태안 만리포, 태안 꽃지 등 지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편의시설 확충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의 소규모 해수욕장의 경우 해변모래 및 수질개선 등의 지역 자원 활용과, 다양한 해양 체험 및 행사확충,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에 따라 관광객의 방문에 따라서 많은 지역은 관광객을 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관광객이 적게 방문 하는 지역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이벤트 및 축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행사 확충이 필요하다.

방문 해수욕장별 필요시설

| 구분 | 빈도 | 1위 | | 2위 | | 3위 | |
|---------------|-----------|------------------|-------------|------------------|-------------|--------------------|-------------|
| | | 항목 | 평균 | 항목 | 평균 | 항목 | 평균 |
| 당진 난지도 | 8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4.38 | 편의시설 확충 | 4.38 | 해변모래 및 수질개선 | 4.00 |
| 서천 춘장대 | 21 | 편의시설확충 | 3.81 | 해변 모래 및 수질개선 | 3.62 | 주변연계관광지 | 3.57 |
| 서산 벌천포 | 1 | 편의시설확충 | 5.00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4.00 | 카페촌 등 위락시설 확충 | 4.00 |
| 보령 용두 | 6 |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 4.00 | 안전시설의 확보 | 4.00 | 편의시설 확충 | 3.83 |
| 보령 대천 | 98 | 편의시설 확충 | 3.85 | 안전시설 확보 | 3.66 | 해변모래 및 수질개선 | 3.63 |
| 보령 호도 | 3 | 해양레저시설 확충 | 4.00 | 카페촌 등 위락시설 확충 | 4.00 | 편의시설 확충 | 4.00 |
| 보령 오봉산 | 2 | 해양레저시설 확충 | 4.00 | 카페촌 등 위락시설 확충 | 4.00 | 편의시설 확충 | 4.00 |
| 보령 원산도 | 2 | 해양레저시설 확충 | 4.00 | 카페촌 등 위락시설 확충 | 4.00 | 편의시설 확충 | 4.00 |
| 보령 독산 | 5 | 안전시설의 확보 | 4.20 | 해변 모래 및 수질개선 | 4.00 | 편의시설 확충 | 4.00 |
| 보령 장안 | 3 | 편의시설 확충 | 4.33 | 주변 연계 관광지 | 4.33 | 해양레저시설 확충 | 4.00 |
| 보령 무창포 | 18 | 편의시설 확충 | 3.67 | 안전시설 확보 | 3.67 | 해변모래 및 수질개선 | 3.56 |
| 태안바람아래 | 1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4.00 | 편의시설 확충 | 4.00 |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 4.00 |
| 태안 장돌 | 1 | 해변 모래 및 수질개선 | 4.00 | 해양레저시설 확충 | 4.00 | 음식 및 맛집거리 조성 | 4.00 |
| 태안 장삼포 | 4 | 해변 모래 및 수질개선 | 4.00 | 안전시설의 확보 | 4.00 | 해양레저시설 확충 | 3.50 |
| 태안 연포 | 4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4.00 | 카페촌 등 위락시설 확충 | 4.00 | 편의시설 확충 | 4.00 |
| 태안 원안 | 1 | 해변 모래 및 수질개선 | 4.00 | 해양레저시설 확충 | 4.00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4.00 |
| 태안 갈음이 | 1 | 편의시설 확충 | 5.00 | 안전시설의 확보 | 5.00 | 주변 연계 관광지 | 4.00 |
| 태안 달산포 | 2 |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 5.00 | 편의시설 확충 | 4.50 | 해변 모래 및 수질개선 | 4.00 |
| 태안곰섬 | 2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4.00 |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 4.00 | 주변 연계 관광지 | 4.00 |
| 태안 마검포 | 4 | 편의시설 확충 | 4.00 |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 3.75 | 주변 연계 관광지 | 3.75 |
| 태안 몽산포 | 13 | 편의시설 확충 | 4.15 | 해변 모래 및 수질개선 | 3.85 | 안전시설의 확보 | 3.85 |
| 태안 청포대 | 13 | 편의시설 확충 | 4.23 | 안전시설의 확보 | 3.85 | 주변연계관광지 | 3.69 |
| 태안 어은들 | 4 | 해양레저시설 확충 | 3.50 | 편의시설 확충 | 3.50 |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 3.50 |
| 태안만리포 | 46 | 편의시설 확충 | 3.85 | 안전시설의 확보 | 3.78 | 해변 모래 및 수질 개선 | 3.65 |
| 태안 의항 | 1 | 음식 및 맛집거리 조성 | 5.00 | 편의시설 확충 | 5.00 | 안전시설의 확보 | 5.00 |

방문 해수욕장별 필요시설

| 구분 | 빈도 | 1위 | | 2위 | | 3위 | |
|---------|----|----------------|------|------------------|------|------------------|------|
| | | 항목 | 평균 | 항목 | 평균 | 항목 | 평균 |
| 태안천리포 | 11 | 해변 모래 및 수질 개선 | 3.82 | 주변 연계 관광지 | 3.82 | 편의시설 확충 | 3.73 |
| 태안 파도리 | 5 | 해양레저시설 확충 | 3.60 | 카페촌 등 위락시설 확충 | 3.60 |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 3.60 |
| 태안밭개 | 1 | 해변 모래 및 수질 개선 | 4.00 | 해양레저시설 확충 | 4.00 | 편의시설 확충 | 4.00 |
| 태안백사장 | 11 | 편의시설 확충 | 4.09 | 주변 연계 관광지 | 3.55 | 해변 모래 및 수질 개선 | 3.45 |
| 태안삼봉 | 4 | 해양레저시설 확충 | 3.75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3.75 | 카페촌 등 위락시설 확충 | 3.75 |
| 안면해변 | 14 | 편의시설 확충 | 4.36 | 안전시설의 확보 | 4.14 | 해변모래 및 수질개선 | 4.00 |
| 태안꽃지 | 48 | 편의시설 확충 | 3.88 | 해변모래 및 수질개선 | 3.75 | 안전시설의 확충 | 3.73 |
| 태안두여 | 1 | 해변모래 및 수질개선 | 3.00 | 해양레저시설 확충 | 3.00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3.00 |
| 태안 방포 | 1 | 편의시설확충 | 5.00 | 해변 모래 및 수질개선 | 4.00 | 해양레저시설 확충 | 4.00 |
| 태안셋별 | 2 | 해양레저시설 확충 | 4.00 | 카페촌 등 위락시설 확충 | 4.00 | 편의시설 확충 | 4.00 |
| 태안기지포 | 2 |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 4.00 | 주변 연계 관광지 | 4.00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3.50 |
| 태안구례포 | 3 | 편의시설 확충 | 4.33 | 안전시설의 확보 | 4.33 | 해변 모래 및 수질 개선 | 4.00 |
| 태안신두리 | 13 | 편의시설 확충 | 3.62 | 주변 연계 관광지 | 3.54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3.46 |
| 태안학암포 | 8 | 편의시설 확충 | 4.00 | 안전시설의 확보 | 3.75 | 음식 및 맛집거리 조성 | 3.63 |
| 태안 사목 | 1 | 편의시설 확충 | 5.00 | 안전시설의 확보 | 5.00 | 해변 모래 및 수질 개선 | 4.00 |
| 태안음포 | 1 | 해양레저시설 확충 | 5.00 | 카페촌 등 위락시설 확충 | 5.00 | 편의시설 확충 | 5.00 |
| 태안꾸지나무골 | 2 | 주변 연계 관광지 | 3.50 | 해변모래 및 수질개선 | 3.0 | 다양한 해양체험 및 행사 확충 | 3.00 |
| 충남기타 | 3 | 해변모래 및 수질개선 | 4.00 | 주변 연계 관광지 | 3.67 | 안전시설의 확보 | 3.67 |

2. 무창포해수욕장 여건과 현황분석

1) 무창포해수욕장

(1) 역사와 관광지 조성과정

-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무창포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1.5km 수심 1~2m, 백사장 폭 50m의 해수욕장으로 주변에는 송림이 울창함. 특히 해수욕뿐만 아니라 갯벌체험까지 더할 수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음.
- 매월 음력 보름과 그믐사리 때, 물이 빠지면 석대도까지 연결되는 1.5km에 달하는 바닷길이 드러나 많은 관광객이 모여듦.



- 관광지 개발사업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음
 - 1986년 8월 관광지 지정(A=0.31km²)-건설부고시 제29호
 - 1988년 6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A=0.2716km²)-교통부
 - 1998년 6월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A=0.2716km²)-충청남도고시 제129호
 - 1990년 11월 관광지 조성사업 착공
 - **1997년 1월 18일(2013. 11.11 변경일)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죽도 등 관광특구 지정**
 - 2003년 9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
 - 2005년 9월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승인 -보령시
 - 2007년 8월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변경(충청남도)-석대도지구 포함
- 무창포해수욕장은 보경8경 대천해수욕장, 무창포바닷길, 성주산휴양림, 보령호, 오서산, 외연열

도, 오천항, 월전죽도 중 제2경에 해당됨



무창포해수욕장의 바다갈라짐 현상



무창포항의 낙조

- 무창포해수욕장은 신비의 바닷길을 조망할 수 있는 무창포 타워가 건립되어 있음. 지상 3층(높이 45m), 연면적 557㎡ 규모로 준공됐으며 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해 휴게음식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음.
-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망대에 오르면 무창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임.



무창포 타워 전경

(2) 무창포해수욕장의 축제현황

①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 무창포 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우며, 바닷길이 열리는 무창포 해변에서 석대도까지의 1.5km의 바닷물갈라짐 현상을 모티브로 바닷길이 열리는 시기에 개최됨.
-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1999년부터 (사)웅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시작된 축제로 7-8월 중 바닷물이 많이 나가는 사리 때를 택하여 행사를 함. 2008년에는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보령시 교육장배 사생대회, 농악놀이, 합창단공연, 그룹사운드공연, 가야금공연, 횃불대행진, 불꽃놀이 등의 행사를 하였음.



-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음력 보름과 그믐에 열리는 바닷길에 맞추어 개최되며, 2018년에는 연예인축하공연, 불꽃쇼, 풍등날리기, 횃불어업재현체험과 갯벌, 조개잡이체험, 맨손물고기장기체험(유료), 노래자랑, 독살어업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됨



②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는 무창포 해수욕장 변영회에서 3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 여는 축제임. 2008년에는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연예인 축하공연, 노래자랑, 도다리잡이 현장체험, 주꾸미잡이 현장체험, 주꾸미 디스코대회 등이 열렸음.
- 축제기간 동안에는 무창포해수욕장과 석대도의 바닷길이 열리면 바지락, 해삼 등 해산물을 잡는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음



③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는 무창포해수욕장 변영회 주관으로 매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1개월 동안 여는 축제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음. 2008년에는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연예인 축하공연, 방문객 장기자랑, 디스코경연, 신비의 바닷길 체험, 해산물먹기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함.



- 무창포항에서는 천수만에서 잡히는 싱싱한 전어와 대하를 맛보고, 맨손고기잡기 체험, 조개잡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신비의 바닷길이 갈라지면 바지락, 민꽃게 (박하지), 해삼, 소라 등 해산물 잡기체험도 실시함



2. 테마형 명품해수욕장(무창포) 조성사업 개요

1) 충청남도 주관 '2017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 공모사업 선정 20억원 확보

(1) 사업개요

- 충청남도 보령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자 낙조와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 해수욕장에 감상과 체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즐길 수 있는 낙조 감상공간이 조성될 계획임
-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이 충청남도 주관 '2017년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 사업' 추가 공모에서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돼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
-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 시범사업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마가 있는 우수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레저·관광 자원인 해수욕장을 사계절 해양휴양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충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임.



(2) 사업내용

- 무창포해수욕장은 20억원이 투입되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보령8경과 어우러지는 낙조 감상공간 조성 및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테마형 명품해수욕장으로 조성될 계획임.
- 2019년까지 힐링, 가족중심 등 차별화 된 테마를 중심으로 낙조·신비의 바닷길 감상 전망대, 낙조·신비의 바닷길 알림 시계탑, 신비의 바닷길 관련 조형물, 바지

락 형상 지압길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설치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명품 휴양지를 조성함

- 보령시는 “무창포해수욕장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관광수요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 할 계획임.

3. 무창포 해수욕장 아기장군 설화와 조형물 설치

1) 무창포 아기장군 이야기⁹⁾

(1) 아기장군 설화와 석대도

- 무창포 아기 장군 설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통일신라 때 옥마산에서 백마가 죽은 이야기와 장군봉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것임을 알 수가 있음
- 아기장군의 설화를 살펴보면,

구전에 따르면 옛날 이곳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부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다 그만 아이 엄마는 죽고 아이(아들)만 살아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후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계모는 어여뻐으나 마음씨는 곱지 않았다. 이러한 다정하지 못한 계모의 보살핌에서 아기에게 먹여야 할 미음과 아기만 방에다 홀로 놓고서 계모는 불일만 보고 돌아와 보면 미음 그릇이 비어있는 등,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아기가 걷기 시작해서는 모두가 잠든 밤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고 새벽닭소리를 들으며 귀가하는 등, 어린 아기의 힘과 기상이 하늘을 무너트릴 위세로 자라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무창포 앞바다 가운데 작은 섬에는 해룡이 바다를 지키며 신통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무예와 힘이 특출난 아기 장군의 소식을 들은 한장수의 주선으로 아기 장군과 해룡의 힘겨루기를 제안하여 마침내 섬에 있는 해룡과 육지의 아기 장군이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그 힘이 땅이 헤지고 섬이 움직이는 괴력으로 가면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였다. 이런 소문에 아기의 아버지는 한편으론 대견해하면서 당시엔 이런 장수감은 나라에서 없앤다는 사실을 알고 역적으로 몰릴 바에는 차라리 죽일 것을 결심하고 어둠이 깔린 저녁에 뒤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 아기 장군이 죽는 순간 어디선가 하얀 말(백마)이 날아와 천둥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었다.

9) <https://blog.naver.com/yungun0352/>

뒤이어 황새 무리가 떼지어 나타나 한참을 구슬프게 울부짖었고 황새 무리가 슬피 울었던 곳이 마치 돌로 좌대를 놓은 것과 같이 생겨 석대도라 부르게 되었고 해수욕장 북쪽에 아기 장군이 무예를 닦던 장군봉이 있으며 석대도는 아기 장군이 태어난 터이고 당시 해룡과 아기 장군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바닷속 땅이 불끈 솟아오르면서 길이 형성되어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보령 8경의 하나인 천혜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듯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무창포 해수욕장인 것이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왜구들의 무기와 창이 있는 군영지였다고 한다. 석대도 앞바다에서는 과거 무역 상선이 좌초되어 청자나 왜구들의 무기 그리고 골동품들이 가끔씩 나오곤 한다.

보름달이 뜨고 가끔씩 저녁때 햇불 들고 바다에서 잡는 해루질 풍습이 여름에는 낮에는 피서 밤에는 해루질로 먹거리를 잡아서 알뜰하게 피서를 즐기는 인파로 매년 인산인해다.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무창포 해수욕장의 아기 장군 설화와 석대도 | 작성자 윤상수

(2) 아기장군 관련 조형물 현황

- 무창포 아기 장군 설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통일신라 때 옥마산에서 백마가 죽은 이야기와 장군봉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것임을 알 수가 있음



아기장군과 석대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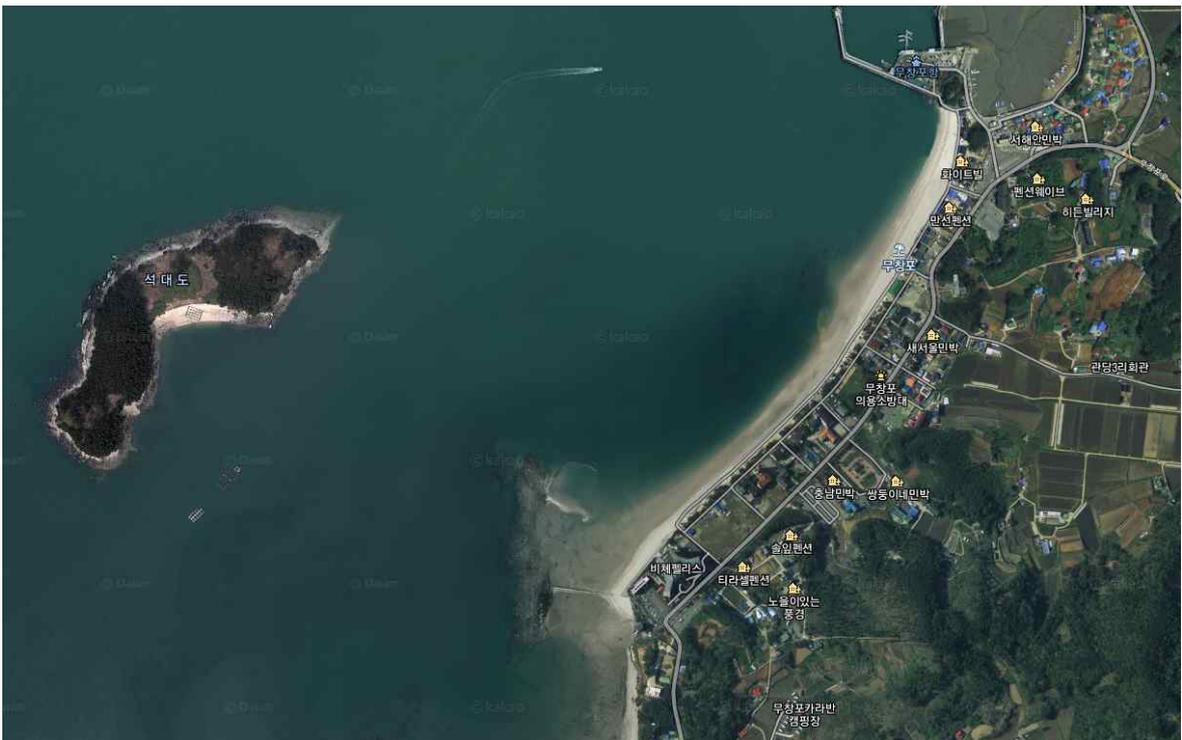
신비의 바닷길 입구 아기장군 조형물

자료 : <http://100mountain.tistory.com/147>

2) 무창포 해수욕장 시설공간 및 조형물 현황분석

(1) 무창포해수욕장 시설공간 현황

- 해수욕장은 전체공간상 무창포항과 펜션지구, 음식점 및 상가거리, 해수욕장 백사장, 해변 녹지지구와 앞바다의 석대도가 입지하고 있음
- 특히, 무창포해수욕장 해변은 석대도와 바닷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 현상이 매년 일어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며, 이와 관련된 축제도 개최되고 있음
- 해변의 바닷가에는 기존 어촌에서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던 독살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어촌계를 중심으로 독살체험프로그램도 운영중임
- 해변 모래사장 배후에는 녹지공간이 길게 형성되어 있고, 중간 결절지에는 주꾸미와 아기동자 조형물 등의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요소요소에 화장실과 안내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음
- 해수욕장의 배후 내부는 숙박과 상가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무창포 해수욕장 위성영상 전경

(2) 무창포해수욕장 주요 조형물 현황

- 무창포해수욕장의 주요 조형물들은 현재 지역특성을 일부 반영하여 혼재하여 입지하고 있음



바닷길 열림 상징탑



바닷길 열림 상징탑안내문



무창포타워 전망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안내판



무창포 주꾸미 상징물



아기장군 관련 조형물



신비의 바닷길 표지석



해상 안전관리 전망탑



상가거리 1



상가거리 2



상가거리 3



상가거리 4



해변 녹지공간 1



해변 녹지공간과 해변로



해변 녹지공간 2



해변 녹지공간 3



어른체험 안내표지판



아기장군과 석대도 이야기 안내표지판



무창포 낙조5경 안내문



홍완기 시인 시비건립 소개비



해안가 조형물



해안녹지공간내 조형물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행사장1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행사장2



녹지공간내 안내초석 1



녹지공간내 길안내



녹지공간내 안내초석 2



녹지공간내 조형물



해안가 녹지공간내 시설물



해변가 공간 및 조형물



해안가 안전전망대 및 조형물



해안가 조형물 설치 전경

4. 무창포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의 과제

1) 무창포 해수욕장의 대표 테마콘텐츠와 스토리 발굴 및 활용 필요

(1) 신비의 바닷길 자연현상에 대한 콘텐츠 발굴 활용 추진

-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은 바닷길이 열리는 무창포 해변에서 석대도까지의 1.5km의 물갈라짐 현상임
 - 무창포해수욕장과 석대도 사이 'S'자 모양의 곡선으로 펼쳐지며, 바닷길이 열리면 바지락, 해삼 등 해산물을 잡는 체험도 할 수 있음
- 무창포해수욕장과 석대도와 연결되는 신비의 바닷길은 아기장군의 설화에 등장하는 석대도의 명칭과 연계되므로 이에 대한 콘텐츠 발굴 및 활용의 추진이 필요함

(2) 신비의 바닷길과 아기장군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필요

- 무창포의 아기 장군 설화는 통일신라 때 옥마산에서 백마가 죽은 이야기와 장군봉 이야기가 연결이 되므로 신비의 바닷길과 아기장군 설화의 스토리텔링화를 추진해야함
 - 황새 무리가 슬피 울었던 곳이 마치 돌로 좌대를 놓은 것과 같이 생겨 석대도라 부르게 되었고 해수욕장 북쪽에 아기 장군이 무예를 닦던 장군봉이 있으며 석대도는 아기 장군이 태어난 터이고 당시 해룡과 아기 장군이 줄다리기하면서 바닷속 땅이 불끈 솟아오르면서 길이 형성되어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보령 8경의 하나인 천혜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음

2) 전체 해수욕장과 지구단위별 시설공간의 환경과 기능의 배분 강화

(1) 전체 및 지구별 환경개선과 동선 등 정비 필요

- 무창포해수욕장은 관광지이면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이미 지구단위별로 시설·공간의 조성이 추진되었고, 일부 부지는 공한지로 유희화 되어 있음.
- 전체 해수욕장은 크게 숙박·상가시설지구(주차장포함)와 배후 펜션지구, 해변의 공원녹지지구, 모래사장비치지구, 독살 및 석대도 지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 지구단위별로 시설·공간의 환경개선과 기능에 따른 정비가 요구됨
- 특히, 이들 지구 중 해변의 공원녹지지구와 광장 및 조형물, 숙박·상가시설지구내

공원과 도로 등은 집중적인 개선을 추진해야함.

(2) 숙박, 상가, 축제, 해변 등 시설·공간별 기능의 배분과 시설공간 설치

- 무창포해수욕장은 숙박지구와 상가지구와 간선도로를 배후에 두고 녹지공간과 광장, 해변 비치 등에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을 하고 있음.
- 특히, 녹지공간과 광장, 해변 비치(모래사장, 바닷길과 독살 등) 등에서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무창포항과 연계하여 무창포 주꾸미·도다리축제와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등 수산물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존의 숙박, 상가, 녹지, 해변 등의 시설·공간별 기능을 배분하고 시설공간의 추가적으로 보완하며, 3개의 축제로 개최할 수 있는 축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도 필요함.

(3) 기존 미활용 시설·공간에 대한 이용성 제고와 활성화 필요

- 기존에 상가거리의 배후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이용하다가 신비의 바닷길 축제시에 행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구내 녹지공간에 대한 테마와 이용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가 요구됨
- 특히, 지구내에서 유희공간으로서 임시시설 및 공간으로 이용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축제개최시 임대 또는 직접 행사 참여를 통한 활용성 제고가 필요함

3) 축제행사장과 이벤트를 고려한 시설공간의 구성과 조형물 설치

(1)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정기 개최 행사장 구성

-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구내 녹지대에 행사장을 조성하고, 지구내도로에 부스를 설치하며, 해변의 모래사장과 바닷길 열린구간과 독살체험장 등의 행사장으로 구성됨
- 이들 행사장은 기존의 녹지대에 무대를 설치하고, 해변에 물고기잡기 체험과 독살 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축제장의 공간도 행사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 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함

(2) 수산물 축제 행사장 구성

- 무창포 주꾸미·도다리축제와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등도 무창포항을 중심으로 개최

도면서 해산물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이 신비의 바닷길도 함께 방문하여 해삼과 소라, 낙지 등을 잡는 체험활동도 하고 있음.

- 해산물 축제는 무창포항에 행사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행사와 맨손고기잡기 체험장 등을 운영하면서, 신비의 바닷길로 이동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므로 이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행사장 구성도 필요함

4) 기존 녹지공간과 조형물의 재정비와 이용객 편의시설의 확충

(1) 녹지공간의 휴식시설 및 포토존 등의 해변공원 기능 강화

- 현재의 녹지공간내에는 화장실 등의 시설과 산책로, 다양한 조형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정비가 요구됨
- 특히, 해변녹지공간내에는 화장실외에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파고라형의 휴식시설과 낙조와 바다를 조망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 할 수 있는 포토존 등의 해변공원의 기능강화가 필요함
- 또한, 해변 녹지공간은 중앙의 바다갈라짐 바닷길을 중심으로 오른쪽 해안은 주꾸미 조형물과 함께 해산물 축제와 관련된 기능과 왼쪽의 비체펠리스 해안은 석대도와 연계된 바닷길과 아기장군과 관련된 신비의 바닷길축제와 관련된 기능의 해변공원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함.

(2) 기존 조형물의 재정비와 이용객 편의시설의 확충

- 해수욕장의 녹지와 광장에 주꾸미상과 바닷길 열림 상징탑, 아기장군 관련 조형물, 기타 예술작품 조형물 등이 녹지와 해변가에 조성되어 테마와 입지특성에 따르지 않고 제 각각이 세워져 있어 이들의 재정비가 요구됨
- 또한, 녹지공간내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일부의 벤취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이용객의 편의시설도 역시 확충이 필요함.

5) 음식점 등 상가와 숙박지구(펜션), 거리 등의 환경정비와 테마 거리 조성

(1) 음식점 등 상가 숙박지구의 환경정비 사업 추진

- 기존의 음식점 등 상가와 숙박지구는 해변 녹지공간의 정비와 연계하여 거리를 환

경정비를 통하여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축제 개최시에는 행사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그리고, 음식점과 숙박지구의 간판과 안내표지 등에 대한 개선과 화분과 쌈지공원 등의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관광거리 조성사업의 추진도 필요함

(2) 무창포 해수욕장 지구내 상가거리 등에 야간 차없는 테마거리 조성

- 음식과 숙박, 상가가 집중된 지구내 상가거리의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수기와 야간에는 차없는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해안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제공함
- 특히, 야간에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거리카페의 테라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과 경관과 시설도입 등의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상인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함.

04

명품해수욕장 조성 및 콘텐츠 구상

1. 단기 :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1) 무창포 상징광장 및 신비의 바닷길 축제 행사장 조성

(1) 해변 바닷길광장·랜드마크 및 행사장 조성

- 기존의 해수욕장내 녹지공간과 해변비치를 활용하여 녹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열린 바닷길로 연결되는 바닷길광장·랜드마크 및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주꾸미·도다리 축제, 전어·대하 축제 등의 행사장 활용공간을 조성
- 특히, 해변의 녹지와 내부 녹지공간은 하나의 광장의 형태가 되면서도 가운데는 지구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중앙광장에는 남포오석 중 자연석 형태의 장군석을 랜드마크로 건립하고, 주변의 공간들은 평소에는 휴식공간과 문화예술공간으로 이용하다가 축제시는 행사장으로 활용



녹지공간내 랜드마크와 행사장 조성부지

(2) 해변 녹지공간의 포토존과 일몰휴식공간의 조성

- 무창포 타워를 주요 전망포인트로 하여 보령8경 중 제2경인 무창포바닷길과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포토존과 일몰시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벤치를 다수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
- 특히, 포토존은 앞바다의 석대도와 바닷길, 독대섬, 직인도, 황죽도 등을 배경으로 일몰포인트를 엄선하여 조성하고, 녹지의 일몰휴식공간은 해변의 녹지대내에 벤취에 앉아서 앞바다를 편안하게 관망하고 쉬어갈 수 있는 파고라 형태의 벤취를 다수 설치하여 일몰명소해수욕장으로 육성



무창포 타워 및 녹지공간내 일몰명소와 휴식공간 조성 대상부지(진도와 거제와현리해수욕장사례)

2) 해수욕장 지구내 녹지공간 ‘아기장군공원’ 휴식공간 조성

(1) 아기장군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발굴 및 테마공간 조성

- 무창포 해수욕장의 석대도와 연결되는 바닷길 열림 현상은 ‘아기장군’ 설화와 관련된 콘텐츠가 있으므로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발굴하고, 이와 연계되는 테마휴식공원을 조성함
 - 예로써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구전되는 뽕할머니 전설을 스토리텔링화 함.

옛날 진도에는 호랑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회동마을은 첨찰산 줄기 끝에 있는 까닭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서 마을 이름도 "호동이"라 불렸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 피해를 입게되자 마을 사람들은 전부 앞 바다의 모도로 도망을 갔는데, 하도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뽕할머니"를 빼놓고 갔습니다.
혼자 남은 뽕할머니는 용왕님께 다시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 2월 그믐께 용왕이 뽕할머니의 꿈에 나타나 "내일 바다에 무지개를 내릴 테니 그 길로 바다를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뽕할머니가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휘어진 길이 생겼습니다.
모도에서 할머니를 걱정하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징과 팽과리를 치며 바닷길을 건너왔습니다.
다시 가족을 만난 할머니는 "내 기도로 바닷길이 열려 너희들을 보았으니 이제 소원이 없다"는 유언을 남긴 채 기진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이래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이곳에 제단을 차리고 할머니의 제사를 지냈고, 이 날을 뽕할머니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날이라고 해서 영등사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때 마을 이름도 호동에서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회동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이에 바닷가의 뽕할머니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용왕제를 지내며 씻김굿, 다시래기,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만가, 북놀이 등 진도 고유의 민속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행사의 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해 각지에서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료 : <http://ryeovisit.tistory.com/1375>]



- 무창포의 아기장군에 대한 설화의 콘텐츠의 주요 테마와 스토리에 따른 추진사업을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추진사업 발골 | 사례 | | | | | | | | | | | |
|-------------------------|---|--|-----------|--------------------------------|-----------|------------------------------------|-----------|---------------------------------|-----------|--|------|---|
| 이야기의 수집과 자료집의 발간 | 도미부인 설화 관련 연구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도미·도미의 부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종 인물 • 정절을 수호하는 인물 • 고결한 윤리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 • 권력자의 횡포에 수난을 당하는 민중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개루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종 인물 • 정절을 파괴하는 인물 •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물 • 권력을 이용하여 민중을 억압하는 지배자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녀의 절개 강조 • 민중의 건강한 삶의 윤리 부각 </div> </div> | | | | | | | | | | |
| 각종 지역내 설화 관련 콘텐츠 개발 | 도미부인 문화콘텐츠 개발 학술 세미나 개최 |  | | | | | | | | | | |
| 관련 향토유적의 수집 및 테마공간조성 |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  | | | | | | | | | | |
| 스토리텔링 해설 및 전통행사와 이벤트 개최 | 진도 병할머니 관련 민속행사와 이벤트 개최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4월 25일(토)</td> <td>속하공연 : 진도향토문화회관(19:00 - 22:00)</td> </tr> <tr> <td>4월 26일(일)</td> <td>진도이행진, 공석행사(병할머니 제사, 큰 씨김국), 영동살놀이</td> </tr> <tr> <td>4월 27일(월)</td> <td>남도틀노래, 다시래기, 강강술래, 진도만가, 영동살노래판</td> </tr> <tr> <td>4월 28일(화)</td> <td>뽕배노래, 진도북놀이, 강강술래, 진도민요교실, 해변가요제 비닷길 연합회</td> </tr> <tr> <td>부대행사</td> <td>병할머니 축원제, 해상선박 퍼레이드, 관광진도 사진전시회, 치어방생법회, 진돗개 모기자랑</td> </tr> </table> | 4월 25일(토) | 속하공연 : 진도향토문화회관(19:00 - 22:00) | 4월 26일(일) | 진도이행진, 공석행사(병할머니 제사, 큰 씨김국), 영동살놀이 | 4월 27일(월) | 남도틀노래, 다시래기, 강강술래, 진도만가, 영동살노래판 | 4월 28일(화) | 뽕배노래, 진도북놀이, 강강술래, 진도민요교실, 해변가요제 비닷길 연합회 | 부대행사 | 병할머니 축원제, 해상선박 퍼레이드, 관광진도 사진전시회, 치어방생법회, 진돗개 모기자랑 |
| 4월 25일(토) | 속하공연 : 진도향토문화회관(19:00 - 22:00) | | | | | | | | | | | |
| 4월 26일(일) | 진도이행진, 공석행사(병할머니 제사, 큰 씨김국), 영동살놀이 | | | | | | | | | | | |
| 4월 27일(월) | 남도틀노래, 다시래기, 강강술래, 진도만가, 영동살노래판 | | | | | | | | | | | |
| 4월 28일(화) | 뽕배노래, 진도북놀이, 강강술래, 진도민요교실, 해변가요제 비닷길 연합회 | | | | | | | | | | | |
| 부대행사 | 병할머니 축원제, 해상선박 퍼레이드, 관광진도 사진전시회, 치어방생법회, 진돗개 모기자랑 | | | | | | | | | | | |
| 캐릭터 등 관광상품의 개발 | 진도 병할머니와 곡성 도깨비 캐릭터 상품화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 | | | | | | | | | |

(2) 해수욕장 거점 해변휴공원 및 문화마당 조성

- 해수욕장은 비치(모래사장)과 완충공간(녹지대), 상업지구(숙박, 음식 등)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여름철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평상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마당을 조성해야함
- 이에 따라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으로 무창포해수욕장의 중심부에 기존의 해변녹지대와 상가지

역에 녹지공간(기존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행사장)에 아기장군의 테마를 도입한 거점 휴식
공원 및 문화마당을 조성함



거점 해변휴식공원 및 문화마당 조성 대상부지



가포해안변 공원 사례



2. 장기 : 무창포 해수욕장 재정비 및 활성화 사업 추진

1)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한 지구별 공공시설 개선사업 실시

(1)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 현(現)정부 국정과제 전략¹의 여행이 있는 일상의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나 편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 후 재정비를 통한 재정비와 공공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 2018년에 해수욕장 중 열린관광지로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망상해수욕장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사업은 신체적 장애, 환경적 장애, 사회적 장애 등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관광지의 접근성을 확보해 '모두를 위한 관광' 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해운대해수욕장 전경(부산시 제공)

(2) 문체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국정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2017년까지 17개소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선정 개소 수를 확대해 2022년까지 100개소를 조성' 할 계획임.

- 2016년에는 보령대천해수욕장이 열린관광지로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2017년의 2배인 12개소로 늘어나면서 공모한 총 26개소 중 서면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하여 12개소가 선정됨
- 2017년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관광공사 공고

「2017년도 열린 관광지」 공모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관광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7년도 열린 관광지」를 공모합니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뜻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관광”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 25

한국관광공사 사장

1. 공모 대상 및 자격

- 공모대상 : 「열린 관광지」 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 ※ 관광사업장의 경우 단일 관광사업장 내 또는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위한 음식, 쇼핑, 체험, 숙박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제공되는 장애물 없는 관광코스의 개발이 가능한 사업장 우대
- 응모자격 : 광역자치단체 또는 관광관련 사업자
- 응모자격제한
 -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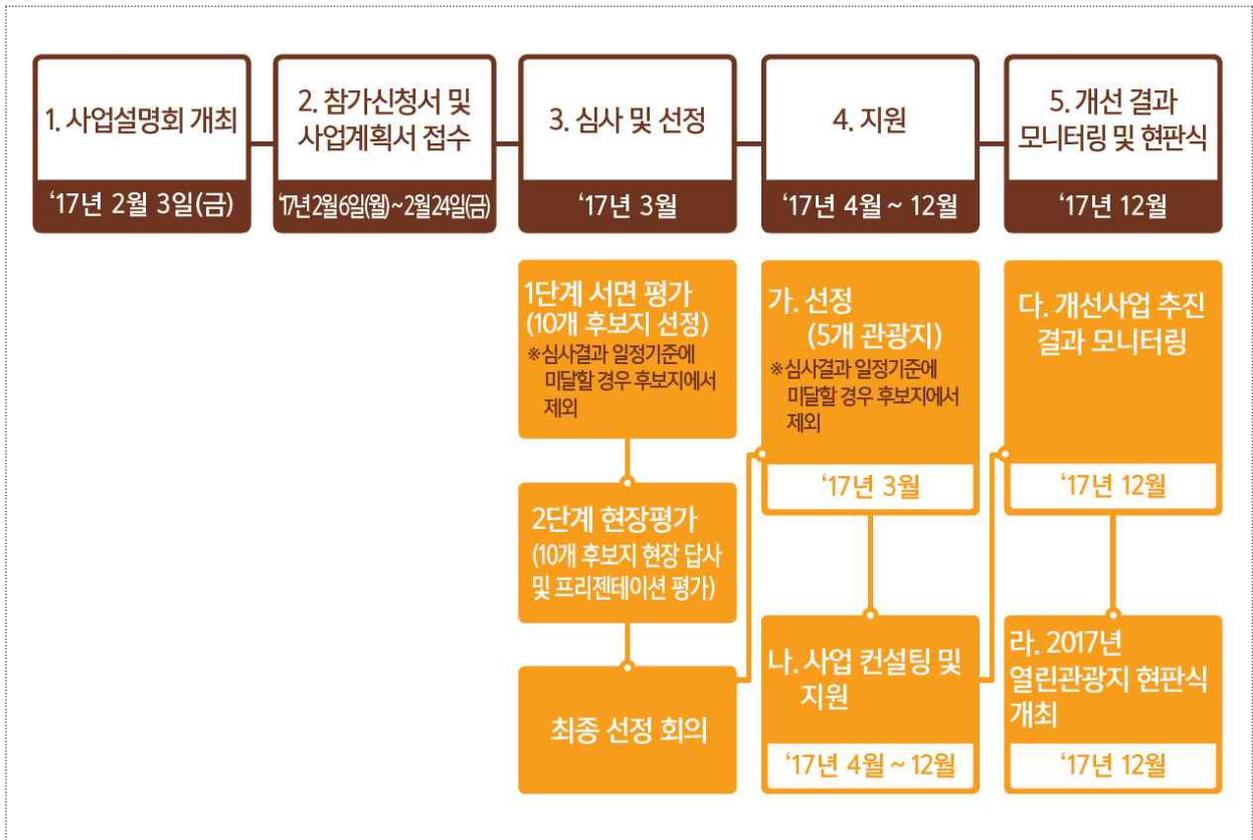
2.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7. 2. 3(금) 14:00~ 17:00
- 장소 : 공사 서울센터 대회의실 (서울 중구 다동 10 서울센터 6층)
 - *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영풍문고 앞 (대우조선해양빌딩 옆)
- 내용 : 사업 취지 및 목적 설명,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안내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2. 6(월) ~ 2017. 2. 24(금)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양식 작성 후 제출(신청서 직인 포함)
 - ※ 신청양식 다운로드 : 한국관광공사(<http://kto.visitkorea.or.kr>)알림)공고 · 공모
- 접수방법 : 공문,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가능
 - 접수처 : 2017 열린 관광지 선정 사무국
 - E-mail : accessall2017@naver.com * '17. 2. 24(금) 24:00 까지 도착 이메일에 한함
 - 주 소 : (06296)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4길 16 성보빌딩 2층
2017 열린 관광지 선정사무국 (☎ 02-3462-9908)
 - ※ 우편접수는 '17.2.24(금) 까지 도착 우편물(등기)에 한함
 - ※ 방문접수는 '17.2.24(금) 18:00 까지 열린 관광지 선정사무국 방문 제출
 - ※ 공문에 첨부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전자 문서 파일은 별도 제출

4. 선정 절차 및 추진 일정



5. 결과 발표 : 2017. 3월 중 (예정)

- 결과발표는 진행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 허위사실 기재,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 시 취소 가능

6. 선정 규모 : 열린 관광지 5개소 내외

7.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지원
 - 시설 개·보수 및 서비스 개선 지원
 - ① 관광지 및 관광사업장 내 장애물 없는 관광 코스의 개발
 - ②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자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③ 관광지 및 관광사업장 내 유모차, 휠체어 등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④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정비, 종사자 교육 등 장애인 접객 서비스 개선 사업
 - ⑤ 홍보 및 마케팅, 각종 컨설팅 비용 등 협의 후 조정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017년 4월 ~ 12월
 - 지원금액 : 개소 당 1.6억 원 한도 내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 자부담 비율 : 국비 : 지방비(또는 관광사업자 자부담) = 5 : 5
 - ※ 관광사업자의 경우 자부담 투자 각서 제출. 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자체의 지원 동의 공문 포함
 - ※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은 사업자 자부담 원칙
 - ※ 관광사업자의 경우 국고 지원분은 개인 또는 영리법인 소유 시설물의 자산 가치 증가와는 관련 없는 시설물의 개·보수나 서비스 개선에 우선 사용
 - ※ 제주지역은 국비지원 없이 자부담 100%
 - 지원목적 외 사용, 지방비 매칭 또는 자부담의 미 이행 시에는 기 지원한 금액의 회수 조치

2) 문체부 관광지 시설지구도입가능시설 재정비 등 개선사업과 연계사업 추진

(1) 관광진흥기본계획(2017. 12.18)의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절차 개선 연계

- 문체부의 관광진흥기본계획(2017)에서는 전략 4의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에서 관광산업 규제개선 및 선장지원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음
 -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절차 개선
 - 관광특구 실효성 제고
-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절차 개선 내용
 - 관광(단)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운영을 위해 조성 및 관리지침 마련 및 관리 기능 강화
 - * 시·도 심의 기능 강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효제도 정비, 평가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 개선('18년~)
 - 관광(단)지 지정기준 개선, 개발방식 다양화, 시설지구·도입가능시설 재정비, 멘토링 지원 등 투자유치 기반 마련
- 관광특구 실효성 제고 개선 내용
 -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특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지원시스템 정비
 - 지정요건 완화(외국인 관광객 수, 토지비율, 지구분리 금지), 관리기능 강화(취소 권고, 평가 내실화), 지정 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 제고
 - *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행을 위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사용 가능 및 개발부담금 감면, 교통·주차 시설에도 관광기금융자 지원 등
- 무창포해수욕장이 지정관광지(1986. 8. 20)이면서 관광특구(1997. 1. 18)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절차의 개선사업에서 시설지구도입가능시설의 재정비와 관광특구의 지정혜택 확대와 연계하여 개선사업을 준비하여 추진

(2) 해수부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2015)에 의한 활성화 사업 추진

- 공공성 확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해수욕장 기초정보 구축사업, 안심해변 지킴이 사업, 공공미술 설치사업 등
- 이용성 개선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 해수욕장 경관시설 조성사업, 축제/이벤트 지원사업, 해수욕장 환경/생태교육사업,

- 레저체험시설 조성사업 등
- 관광특구 실효성 제고
- 관광성 강화사업과 연계 가능한
 - 테마해수욕장 육성사업,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해수욕장 공원화 사업, 해수욕장 관광복합공간 정비사업 등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2011), “해변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수욕장 정보활용방안 연구” 에서 요약 재정리
- 김경태외(2016), “충남 해수욕장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연구”, 충남연구원.
- 김태희(2003), “영동지역 해수욕장 차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령시(2008), 「보령시지」
- 심미숙(2008), “해수욕장 이용객의 선택속성이 전반적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학위논문」
- 윤근수(2006), “충남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의 해양스포츠 인식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충청남도(2017), 「2017 충청관광기본자료」
- 충청남도(2017), 「제6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 해양부(2011), “해변관광활성화를 위한 해수욕장 정보활용방안 연구” .
- 해양수산부(2015),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https://blog.naver.com/yungun0352/>
- <http://100mountain.tistory.com/147>